

제338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5년12월15일(화)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4.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8.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9.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2.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3.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6.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계속)
4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4.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5.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6.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7.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8.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9.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1.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2.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6.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7.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8.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9.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0.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1.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2.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3. 勤勞者의날制定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계속)
7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2.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3.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7.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96.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9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0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0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0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0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105.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0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0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1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1.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11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1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2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된 안건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 · 윤호중 · 신기남 · 강기정 · 우원식 · 박광온 · 한정애 · 김현미 · 신정훈 · 장하나 의원 발의)(의안번호 17057)(계속) 9
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 · 신기남 · 김영록 · 우원식 · 안규백 · 송호창 · 신정훈 · 박광온 · 강기정 · 장하나 · 이인영 · 은수미 · 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7560)(계속) 9
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양창영 · 최봉홍 · 이한성 · 김종태 · 윤영석 · 경대수 · 황영철 · 권성동 · 박창식 · 은수미 의원 발의)(계속) 9
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9
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6.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 · 신경림 · 유의동 · 강석훈 · 송영근 · 권성동 · 심윤조 · 손인춘 · 강은희 · 유재중 의원 발의)(계속) 9
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 의원 대표발의)(김용남 · 배덕광 · 류지영 · 이자스민 · 문대성 · 최봉홍 · 윤영석 · 이상일 · 김도읍 · 김제식 의원 발의)(계속) 9
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주영순 · 나성린 · 류지영 · 김태환 · 이노근 · 황주홍 · 이완영 · 김상민 · 김정록 · 신의진 의원 발의)(계속) 9
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10.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 의원 대표발의)(이상일 · 이만우 · 심학봉 · 이재영 · 민현주 · 주영순 · 박대출 · 이한성 · 남경필 · 정희수 · 염동열 · 한선교 · 주호영 의원 발의)(계속) 9
11.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 · 설훈 · 박홍근 · 박민수 · 민홍철 · 배재정 · 김상희 · 이찬열 · 이목희 · 오제세 의원 발의)(계속) 10
12.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1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김상민 · 염동열 · 이완영 · 홍지만 · 이한성 · 박윤옥 · 신성범 · 주영순 · 박창식 · 이우현 · 김명연 의원 발의)(계속) 10
1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주영순 · 이한성 · 조명철 · 황주홍 · 양창영 · 나성린 · 류지영 · 김태환 · 이노근 · 이완영 · 김을동 · 김상민 · 김정록 의원 발의)(계속) 10
1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 · 진선미 · 최동익 · 강동원 · 이목희 · 우원식 · 이인영 · 송호창 · 김승남 · 최규성 · 윤관석 의원 발의)(계속) 10
1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 · 이한성 · 정희수 · 이만우 · 박인숙 · 유승우 · 유기준 · 김성곤 · 장윤석 · 정문헌 · 심재철 · 강기윤 · 박대동 · 문정림 의원 발의)(계속) 10
1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주영순 · 나성린 · 류지영 · 김태환 · 이노근 · 황주홍 · 이완영 · 김상민 · 김정록 · 신의진 의원 발의)(계속) 10
1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 · 김현미 · 이목희 · 이미경 · 이학영 · 은수미 · 장하나 · 전순옥 · 한정애 · 홍종학 의원 발의)(계속) 10
2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 · 신정훈 · 안규백 · 김영록 · 정호준 · 박광온 · 신경민 · 윤호중 · 신기남 · 송호창 · 김춘진 · 한정애 의원 발의)(계속) 10
2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0
2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23.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 의원 대표발의)(김용남 · 배덕광 · 류지영 · 이자스민 · 문대성 · 최봉홍 · 윤영석 · 이상일 · 김도읍 · 김제식 의원 발의)(계속) 10

24.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 · 조정식 · 변재일 · 송호창 · 김관영 · 전정희 · 김상희 · 배재정 · 윤후덕 · 한정애 · 박광온 의원 발의)(계속) 10
2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 · 이상직 · 민홍철 · 이개호 · 김성곤 · 김기준 · 부좌현 · 임수경 · 박남춘 · 김상희 · 김광진 · 송호창 · 이목희 의원 발의)(계속) 10
2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 · 이개호 · 진성준 · 민홍철 · 박민수 · 유승희 · 조정식 · 박남춘 · 김우남 · 전해철 의원 발의)(계속) 10
2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 · 이개호 · 김성곤 · 조정식 · 이윤석 · 최규성 · 강창일 · 진성준 · 김현 · 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10
28.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김우남 · 박민수 · 부좌현 · 이개호 · 이목희 · 임수경 · 정성호 · 정호준 · 주승용 의원 발의)(계속) 10
29.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3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 · 안규백 · 김태년 · 김춘진 · 이찬열 · 김상희 · 이미경 · 설훈 · 원혜영 · 이원욱 · 심재권 · 이석현 의원 발의)(계속) 10
3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0
32.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 · 인재근 · 정청래 · 조정식 · 이개호 · 박홍근 · 김상희 · 장하나 · 이목희 · 김영주 · 우상호 · 안규백 의원 발의)(계속) 10
33.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 · 이미경 · 유은혜 · 김기식 · 이인영 · 민병두 · 이춘석 · 노웅래 · 정호준 · 김성주 · 최민희 · 박남춘 · 전해철 · 우상호 의원 발의)(계속) 10
3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1
3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1
36.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1
3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 · 송광호 · 강기윤 · 김기선 · 이종배 · 이완영 · 신성범 · 이만우 · 강석훈 · 홍문표 의원 발의)(계속) 11
3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1
3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박덕흠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11
4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4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 · 박남춘 · 유승희 · 김우남 · 노영민 · 백군기 · 황주홍 · 이찬열 · 이원욱 · 김윤덕 의원 발의)(계속) 11
4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 · 김기선 · 김태호 · 윤명희 · 윤영석 · 이만우 · 이채익 · 정갑윤 · 정문현 · 함진규 의원 발의)(계속) 11
4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 · 배재정 · 윤관석 · 박완주 · 박주선 · 김성곤 · 박홍근 · 임수경 · 김용익 · 이원욱 의원 발의)(계속) 11
4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4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 · 김기선 · 김태호 · 윤명희 · 윤영석 · 이만우 · 이채익 · 정갑윤 · 정문현 · 함진규 의원 발의)(계속) 11
4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 · 배재정 · 윤관석 · 박완주 · 박주선 · 김성곤 · 박홍근 · 임수경 · 김용익 · 이원욱 의원 발의)(계속) 11
4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 · 인재근 · 정청래 · 조정식 · 이개호 · 박홍근 · 김상희 · 장하나 · 이목희 · 김영주 · 우상호 의원 발의)(계속) 11
4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4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 의원 대표발의)(황인자 · 손인춘 · 노철

래 · 정희수 · 박윤옥 · 이자스민 · 이완영 · 윤상현 · 이에리사 · 홍문표 의원 발의)(계속) 11

5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 · 설훈 · 박홍근 · 박민수 · 민홍철 · 배재정 · 김상희 · 이찬열 · 이목희 · 오제세 의원 발의)(계속) 11

5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 · 양창영 · 김기선 · 김진태 · 황영철 · 송영근 · 박창식 · 유승우 · 이완영 · 이자스민 의원 발의)(계속) 11

5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1

5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54.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 · 양창영 · 송영근 · 김진태 · 김을동 · 김재경 · 홍지만 · 김희선 · 정수성 · 이운룡 · 정문헌 · 강기운 의원 발의)(계속) 11

55.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양창영 · 황영철 · 최봉홍 · 권성동 · 박창식 · 이강후 · 주영순 · 정문헌 · 김정록 · 조현룡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29)(계속) 11

56.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양창영 · 한선교 · 이한성 · 최봉홍 · 경대수 · 민홍철 · 김태원 · 정문헌 · 권성동 · 김종태 · 윤영석 · 박민수 · 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4342)(계속) 11

57.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3154)(계속) 11

58.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6476)(계속) 11

59.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6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 · 김동철 · 이상민 · 유대운 · 오제세 · 홍종학 · 유성엽 · 김영록 · 최규성 · 김재운 의원 발의)(계속) 11

61.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 · 권은희 · 김경협 · 김광진 · 김우남 · 김제남 · 박남춘 · 박지원 · 신경민 · 우원식 · 유성엽 · 유승희 · 이개호 · 이인영 · 이해찬 · 전해철 · 진성준 · 최동익 · 최원식 의원 발의)(계속) 12

62.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 · 이인영 · 안규백 · 박광온 · 이윤석 · 부좌현 · 배재정 · 송호창 · 장하나 · 한명숙 · 유은혜 · 은수미 · 김관영 · 한정애 · 김동철 의원 발의)(계속) 12

6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2

6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 · 이인영 · 안규백 · 박광온 · 이윤석 · 부좌현 · 배재정 · 송호창 · 장하나 · 한명숙 · 유은혜 · 은수미 · 김관영 · 한정애 · 김동철 의원 발의)(계속) 12

66.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 · 이만우 · 황영철 · 박성호 · 강기운 · 정문헌 · 이한성 · 최동익 · 이재영 · 문정림 · 정의화 · 김재원 · 민홍철 · 박인숙 · 이자스민 의원 발의)(계속) 12

67.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 · 임수경 · 한정애 · 유인태 · 진성준 · 유은혜 · 김현미 · 윤호중 · 안규백 · 이찬열 · 노웅래 · 유대운 · 김현 · 장병완 의원 발의)(계속) 12

68.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 · 남인순 · 박지원 · 배기운 · 부좌현 · 신경민 · 오영식 · 윤호중 · 윤후덕 · 이상직 · 조정식 · 전정희 · 최동익 · 한정애 의원 발의)(계속) 12

69.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2

70.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71.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김윤덕 · 백재현 · 변재일 · 박홍근 · 황주홍 · 김광진 · 신경민 · 김태년 · 조정식 의원 발의)(계속) 12

72.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 · 이인영 · 안규백 · 박광온 · 이윤석 · 부좌현 · 배재정 · 송호창 · 장하나 · 한명숙 · 유은혜 · 은수미 · 김관영 · 한정애 · 김동철 의원 발의)(계속) 12

73. 勤勞者의날制定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2

7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 · 이인영 · 안규백 · 박광온 · 이윤석 · 부좌현 · 배재정 · 송호창 · 장하나 · 한명숙 · 유은혜 · 은수미 · 김관영 · 한정애 · 김동철 의원 발의)(계속) 12
7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 · 정문헌 · 유승우 · 홍철호 · 송영근 · 김한표 · 황인자 · 이이재 · 김재경 · 김을동 의원 발의)(계속) 12
7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7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 · 신경림 · 유의동 · 강석훈 · 송영근 · 권성동 · 심윤조 · 손인춘 · 강은희 · 유재중 의원 발의)(계속) 12
7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 · 이인영 · 안규백 · 박광온 · 이윤석 · 부좌현 · 배재정 · 송호창 · 장하나 · 한명숙 · 유은혜 · 은수미 · 김관영 · 한정애 · 김동철 의원 발의)(계속) 12
7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 · 신경림 · 유의동 · 강석훈 · 송영근 · 권성동 · 심윤조 · 손인춘 · 강은희 · 유재중 의원 발의)(계속) 12
8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2
8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82.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 · 김기준 · 백균기 · 심재권 · 최민희 · 權垠希 · 안민석 · 박수현 · 최원식 · 김태년 · 윤호중 · 은수미 · 진선미 · 김기식 · 이학영 의원 발의)(계속) 12
83.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이자스민 · 정희수 · 류지영 · 인재근 · 박맹우 · 심학봉 · 권성동 · 양창영 · 김기선 · 김제식 의원 발의)(계속) 12
8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 · 김재원 · 김진태 · 정문헌 · 유승우 · 홍철호 · 송영근 · 황인자 · 이이재 · 김재경 의원 발의)(계속) 13
8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 · 이개호 · 김우남 · 강창일 · 신경민 · 부좌현 · 박남춘 · 이춘석 · 이종배 · 양승조 의원 발의)(계속) 13
8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87.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3
8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윤관석 · 배기운 · 김성곤 · 이학영 · 주승용 · 전순옥 · 민홍철 · 이상직 · 이상민 · 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13
8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 · 이완영 · 김상훈 · 김기선 · 김한표 · 강기운 · 김희선 · 박명재 · 이이재 · 송영근 의원 발의)(계속) 13
9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 · 이인영 · 안규백 · 박광온 · 이윤석 · 부좌현 · 배재정 · 송호창 · 장하나 · 한명숙 · 유은혜 · 은수미 · 김관영 · 한정애 · 김동철 의원 발의)(계속) 13
9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3409)(계속) 13
9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7)(계속) 13
9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9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이자스민 · 이한성 · 인재근 · 박인숙 · 정희수 · 안홍준 · 서상기 · 권성동 · 양창영 · 신경림 의원 발의) 22
9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 · 양창영 · 김세연 · 이재영 · 정수성 · 김정록 · 박덕흠 · 최봉홍 · 김한표 · 홍문표 의원 발의) 22
96.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 · 설훈 · 신계륜 · 부좌현 · 김성주 · 배재정 · 최재천 · 최원식 · 민홍철 · 변재일 · 홍익표 · 김관영 · 김영록 · 이인영 · 이철우 · 김한표 ·

김동완 · 이완영 · 조정식 의원 발의)	22
9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 · 홍철호 · 강은희 · 이종배 · 이상일 · 박창식 · 박윤옥 · 김태원 · 오신환 · 문대성 의원 발의)	22
9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 · 양창영 · 김세연 · 이재영 · 정수성 · 김정록 · 박덕흠 · 최봉홍 · 김한표 · 홍문표 의원 발의)	22
9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 · 인재근 · 전순옥 · 정성호 · 노웅래 · 진성준 · 오영식 · 우원식 · 장하나 · 최규성 · 노영민 의원 발의)	22
10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 · 윤후덕 · 은수미 · 우원식 · 심상정 · 박원석 · 정성호 · 서영교 · 박남춘 · 최원식 · 이미경 · 이석현 · 김춘진 의원 발의)	22
10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 · 박성호 · 이노근 · 이장우 · 김희국 · 김태원 · 이현승 · 함진규 · 황영철 · 홍문표 · 이학재 의원 발의)	22
10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석 의원 대표발의)(이윤석 · 남인순 · 전순옥 · 윤후덕 · 임수경 · 윤관석 · 정성호 · 유성엽 · 박남춘 · 김상희 · 김경협 · 김광진 · 김을동 · 문대성 · 이우현 의원 발의)	23
10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 · 윤후덕 · 은수미 · 우원식 · 심상정 · 박원석 · 정성호 · 서영교 · 박남춘 · 최원식 · 이미경 · 이석현 · 김춘진 의원 발의)	23
10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 · 한정애 · 장하나 · 은수미 · 우원식 · 이석현 · 김영주 · 최규성 · 오영식 · 인재근 의원 발의)	23
105. 동 · 서 ·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3
10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 의원 대표발의)(민현주 · 류지영 · 김희국 · 이만우 · 권성동 · 경대수 · 신경림 · 김명연 · 양창영 · 김정록 의원 발의)	23
10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 · 인재근 · 장하나 · 최규성 · 이개호 · 오영식 · 박홍근 · 진성준 · 김경협 · 은수미 · 우원식 의원 발의)	23
1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 · 김광진 · 김현미 · 안규백 · 신경민 · 황주홍 · 오영식 · 은수미 · 김용익 · 김기준 · 추미애 · 홍종학 · 우원식 · 인재근 의원 발의)	23
10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김희국 · 한선교 · 이한성 · 류지영 · 권은희 · 이종배 · 이완영 · 이종진 · 서상기 · 이철우 의원 발의)	23
11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추미애 · 조정태 · 이인영 · 최동익 · 김성곤 · 정세균 · 홍영표 · 오영식 · 이원욱 · 박광온 · 신정훈 의원 발의)	23
111.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 · 장병완 · 조정식 · 정세균 · 안규백 · 심상정 · 유인태 · 정성호 · 김관영 · 한정애 · 이미경 · 이석현 의원 발의)	23
1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 · 서상기 · 안상수 · 이정현 · 경대수 · 홍문표 · 김승남 · 신의진 · 이인제 · 이이재 의원 발의)	23
11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 · 이종배 · 홍철호 · 서상기 · 조명철 · 이한성 · 윤재옥 · 유승우 · 전하진 · 서청원 의원 발의)	23
11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 · 설훈 · 황주홍 · 김영록 · 홍종학 · 백재현 · 오제세 · 김승남 · 송호창 · 부좌현 · 권영희 의원 발의)	23
11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 · 부좌현 · 박범계 · 우윤근 · 황주홍 · 안규백 · 정청래 · 김성곤 · 홍종학 · 이개호 의원 발의)	23
11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호준 의원 대표발의)(정호준 · 신경민 · 전순옥 · 장병완 · 김민기 · 윤관석 · 이개호 · 박광온 · 이찬열 · 박홍근 의원 발의)	23
11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 의원 대표발의)(민현주 · 안홍준 · 홍문표 · 류지영 · 조명철 · 이한성 · 유승민 · 이종훈 · 이학재 · 이만우 의원 발의)	23

11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 · 이개호 · 김광진 · 문병호 · 김성곤 · 장병완 · 천정배 · 황주홍 · 송호창 · 백재현 의원 발의) 23

11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 · 김을동 · 이종진 · 이재영 · 이명수 · 송영근 · 유승우 · 박성호 · 강석호 · 김태원 의원 발의) 23

12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추미애 · 조경태 · 이인영 · 최동익 · 김성곤 · 정세균 · 홍영표 · 오영식 · 이원욱 · 박광온 · 신정훈 의원 발의) 23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과 4월 임시국회도 남아 있지만 이번 임시국회가 실질적으로 안건 심사를 할 수 있는 제19대 마지막 국회가 아닌가 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여야 간 합의를 통하여 위원회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만 최근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심사와 관련하여 여야 간의 의견 차이로 위원회 운영에 다소 차질이 발생하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양보와 이해로 위원회 일정을 다시 잡고 심사를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노동개혁법안에 대하여는 여야를 비롯하여 노사 간에도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발휘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연말과 내년 총선을 맞아 무척 바쁘실 텐데도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방의 의무를 무사히 마치고 우리 위원회로 전보되어 온 직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유관동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열심히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한 후 최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신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 · 윤호중 · 신기남 · 강기정 · 우원식 · 박광온 · 한정애 · 김현미 · 신정훈 · 장하나 의원 발의)(의안번호 17057)(계속)
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 · 신기남 · 김영록 · 우원식 · 안규백 · 송호창 · 신정훈 · 박광온 · 강기정 · 장하나 · 이인영 · 은수미 · 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7560)(계속)
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양창영 · 최봉홍 · 이한성 · 김종태 · 윤영석 · 경대수 · 황영철 · 권성동 · 박창식 · 은수미 의원 발의)(계속)
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 · 신경림 · 유의동 · 강석훈 · 송영근 · 권성동 · 심윤조 · 손인춘 · 강은희 · 유재중 의원 발의)(계속)
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 의원 대표발의)(김용남 · 배덕광 · 류지영 · 이자스민 · 문대성 · 최봉홍 · 윤영석 · 이상일 · 김도읍 · 김제식 의원 발의)(계속)
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주영순 · 나성린 · 류지영 · 김태환 · 이노근 · 황주홍 · 이완영 · 김상민 · 김정록 · 신의진 의원 발의)(계속)
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 의원 대표발의)(이상일 · 이만우 · 심학봉 · 이재영 · 민현주 · 주영순 · 박대출 · 이한성 · 남경필 · 정희수 · 염동열 · 한선교 · 주호영 의원 발의)(계속)

11.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설훈·박홍근·박민수·민홍철·배재정·김상희·이찬열·이목희·오제세 의원 발의)(계속)
12.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수도권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김상민·염동열·이완영·홍지만·이한성·박윤옥·신성범·주영순·박창식·이우현·김명연 의원 발의)(계속)
14. 수도권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주영순·이한성·조명철·황주홍·양창영·나성린·류지영·김태환·이노근·이완영·김을동·김상민·김정록 의원 발의)(계속)
15. 수도권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진선미·최동익·강동원·이목희·우원식·이인영·송호창·김승남·최규성·윤관석 의원 발의)(계속)
16. 수도권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이한성·정희수·이만우·박인숙·유승우·유기준·김성곤·장윤석·정문현·심재철·강기윤·박대동·문정림 의원 발의)(계속)
1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주영순·나성린·류지영·김태환·이노근·황주홍·이완영·김상민·김정록·신의진 의원 발의)(계속)
1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김현미·이목희·이미경·이학영·은수미·장하나·전순옥·한정애·홍종학 의원 발의)(계속)
2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신정훈·안규백·김영록·정호준·박광온·신경민·윤호중·신기남·송호창·김춘진·한정애 의원 발의)(계속)
2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 의원 대표발의)(김용남·배덕광·류지영·이자스민·문대성·최봉홍·윤영석·이상일·김도읍·김제식 의원 발의)(계속)
24.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조정식·변재일·송호창·김관영·전정희·김상희·배재정·윤후덕·한정애·박광온 의원 발의)(계속)
2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이상직·민홍철·이개호·김성곤·김기준·부좌현·임수경·박남춘·김상희·김광진·송호창·이목희 의원 발의)(계속)
2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이개호·진성준·민홍철·박민수·유승희·조정식·박남춘·김우남·전해철 의원 발의)(계속)
2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개호·김성곤·조정식·이윤석·최규성·강창일·진성준·김현·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28.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김우남·박민수·부좌현·이개호·이목희·임수경·정성호·정호준·주승용 의원 발의)(계속)
29.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안규백·김태년·김춘진·이찬열·김상희·이미경·설훈·원혜영·이원욱·심재권·이석현 의원 발의)(계속)
3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2.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인재근·정청래·조정식·이개호·박홍근·김상희·장하나·이목희·김영주·우상호·안규백 의원 발의)(계속)
33.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이미경·유은혜·김기식·이인영·민병두·이춘석·노웅래·정호준·김성주·최민희·박남춘·전해철·우상호 의원 발의)(계속)

3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6.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송광호·강기윤·김기선·이종배·이완영·신성범·이만우·강석훈·홍문표 의원 발의)(계속)
3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박덕흠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4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박남춘·유승희·김우남·노영민·백군기·황주홍·이찬열·이원욱·김윤덕 의원 발의)(계속)
4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김기선·김태호·윤명희·윤영석·이만우·이채익·정갑윤·정문현·함진규 의원 발의)(계속)
4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배재정·윤관석·박완주·박주선·김성곤·박홍근·임수경·김용익·이원욱 의원 발의)(계속)
4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김기선·김태호·윤명희·윤영석·이만우·이채익·정갑윤·정문현·함진규 의원 발의)(계속)
4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배재정·윤관석·박완주·박주선·김성곤·박홍근·임수경·김용익·이원욱 의원 발의)(계속)
4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인재근·정청래·조정식·이개호·박홍근·김상희·장하나·이목희·김영주·우상호 의원 발의)(계속)
4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 의원 대표발의)(황인자·손인춘·노철래·정희수·박윤옥·이자스민·이완영·윤상현·이에리사·홍문표 의원 발의)(계속)
5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설훈·박홍근·박민수·민홍철·배재정·김상희·이찬열·이목희·오제세 의원 발의)(계속)
5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양창영·김기선·김진태·황영철·송영근·박창식·유승우·이완영·이자스민 의원 발의)(계속)
5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4.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양창영·송영근·김진태·김을동·김재경·홍지만·김희선·정수성·이운룡·정문현·강기윤 의원 발의)(계속)
55.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양창영·황영철·최봉홍·권성동·박창식·이강후·주영순·정문현·김정록·조현룡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29)(계속)
56.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양창영·한선교·이한성·최봉홍·경대수·민홍철·김태원·정문현·권성동·김종태·윤영석·박민수·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4342)(계속)
57.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3154)(계속)
58.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6476)(계속)
59.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김동철·이상민·유대운·오제세·홍종학·유성엽·김영록·최규성·김재윤 의원 발의)(계속)

- 61.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권은희·김경협·김광진·김우남·김제남·박남춘·박지원·신경민·우원식·유성엽·유승희·이개호·이인영·이해찬·전해철·진성준·최동익·최원식 의원 발의)(계속)
- 62.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이인영·안규백·박광온·이윤석·부좌현·배재정·송호창·장하나·한명숙·유은혜·은수미·김관영·한정애·김동철 의원 발의)(계속)
- 6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이인영·안규백·박광온·이윤석·부좌현·배재정·송호창·장하나·한명숙·유은혜·은수미·김관영·한정애·김동철 의원 발의)(계속)
- 66.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이만우·황영철·박성호·강기윤·정문헌·이한성·최동익·이재영·문정림·정의화·김재원·민홍철·박인숙·이자스민 의원 발의)(계속)
- 67.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임수경·한정애·유인태·진성준·유은혜·김현미·윤호중·안규백·이찬열·노웅래·유대운·김현·장병완 의원 발의)(계속)
- 68.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남인순·박지원·배기운·부좌현·신경민·오영식·윤호중·윤후덕·이상직·조정식·전정희·최동익·한정애 의원 발의)(계속)
- 69.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0.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1.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김윤덕·백재현·변재일·박홍근·황주홍·김광진·신경민·김태년·조정식 의원 발의)(계속)
- 72.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이인영·안규백·박광온·이윤석·부좌현·배재정·송호창·장하나·한명숙·유은혜·은수미·김관영·한정애·김동철 의원 발의)(계속)
- 73. **勤勞者의날制定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이인영·안규백·박광온·이윤석·부좌현·배재정·송호창·장하나·한명숙·유은혜·은수미·김관영·한정애·김동철 의원 발의)(계속)
- 7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정문헌·유승우·홍철호·송영근·김한표·황인자·이이재·김재경·김을동 의원 발의)(계속)
- 7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신경림·유의동·강석훈·송영근·권성동·심윤조·손인춘·강은희·유재중 의원 발의)(계속)
- 7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이인영·안규백·박광온·이윤석·부좌현·배재정·송호창·장하나·한명숙·유은혜·은수미·김관영·한정애·김동철 의원 발의)(계속)
- 7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신경림·유의동·강석훈·송영근·권성동·심윤조·손인춘·강은희·유재중 의원 발의)(계속)
- 8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8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2.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김기준·백근기·심재권·최민희·權垠希·안민석·박수현·최원식·김태년·윤호중·은수미·진선미·김기식·이학영 의원 발의)(계속)
- 83.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이자스민·정희수·류지영·인재근·박맹우·심학봉·권성동·양창영·김기선·김제식 의원 발의)(계속)

8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김재원·김진태·정문현·유승우·홍철호·송영근·황인자·이이재·김재경 의원 발의)(계속)
8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이개호·김우남·강창일·신경민·부좌현·박남춘·이춘석·이종배·양승조 의원 발의)(계속)
8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7.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8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윤관석·배기운·김성곤·이학영·주승용·전순옥·민홍철·이상직·이상민·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8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이완영·김상훈·김기선·김한표·강기윤·김희선·박명재·이이재·송영근 의원 발의)(계속)
9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이인영·안규백·박광운·이윤석·부좌현·배재정·송호창·장하나·한명숙·유은혜·은수미·김관영·한정애·김동철 의원 발의)(계속)
9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3409)(계속)
9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7)(계속)
9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15분)

○위원장 김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3항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9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권성동 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2항까지 62건의 환경부 소관 법률안과 청원 그리고 의사일정 제63항부터 제93항까지 31건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소위원장 권성동 법안심사소위원장 권성동입니다.

지금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18일과 11월 23일 환경부 차관 등 정부 측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62건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이석현 의원, 양창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자동차제작자의 인증 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자동차제작자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기기로 측정된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냉매 관련 신고와 동 대안에 따른 신고를 통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신고양식 및 절차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고시하거나 지침으로 정하여 통일된 방식·절차로 제출받고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붙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류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징수절차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용남 의원과 주영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영 실적이 저조한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인가를 받지 않고 재이용 사업을 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인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벌금형을 2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이상일 의원과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석면해체·제거업자와 공사발주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석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김상민 의원, 주영순 의원, 인재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환경부장관이 미인증 수도용 제품을 제조한 사업자 등에게 수거 등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고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접 수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해 응시자격을 3년간 정지하는 등 제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국민 위생안전 제고를 위해 사립학교, 병원, 공동주택도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박성호 의원, 이석현 의원, 주영순 의원, 우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5건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명칭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변경하고 5년마다 정기적으로 기술진단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 강화를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고, 시설 운영자가 수질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김용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습지를 면허 없이 매립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 등이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창일 의원, 부좌현 의원, 주승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동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시행규칙에서 정한 빛방사허용기준으로는 빛공해 방지가 어려울 때에는 광역 지자체의 조례로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보호운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긴급조치의 사유를 구체화하고 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검출된 폐기물은 반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유해물질’은 동 법의 적용범위와 상충하므로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하수도 수입금을 개인하수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것으로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해 공공하수도의 효율적 유지·관리가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공공하수도 수입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구체화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3건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하수관로와 배수관거의 정기 검사 규정을 삭제하고 매수토지의 사후관리 업무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하수도법상 별도의 관리체계가 있는 하수관로의 정기 검사 규정은 삭제하되 별도의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배수관거의 정기 검사 규정은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타 수계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하수관로의 정기 검사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매수토지 사후관리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숙박업소와 식당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좌현 의원, 안홍준 의원, 홍익표 의원

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안홍준 의원안과 홍익표 의원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둘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법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명령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부좌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홍준 의원, 홍익표 의원, 이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결과의 사용승인 취소 사유를 법률에 상향 규정 하였고, 둘째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에 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하 개정 내용은 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인자 의원, 양승조 의원, 권성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자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둘째·셋째 주요 내용은 유인물 17페이지 이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성동 의원, 양창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5건의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이행명령제와 환경안심 인증제도를 도입 하였습니다.

둘째 이하의 내용은 유인물 18쪽 이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김우남 의원과 장하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생활환경 및 환경오염의 정의에 각각 인공조명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환경기준 설정 시에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0일, 동월 23일, 동월 24일 고용노동부 차관 등 정부 측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총 31건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본 계획 수립 시 지난 계획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토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용 개정 없이 용어와 표현만 쉽게 바꾸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또 안홍준 의원, 한명숙 의원, 김영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 21쪽과 2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격증 보유자가 자격증을 타인에게 불법 대여한 경우 해당 자격증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적용대상을 법 시행 이후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자로 부칙에 명기하였습니다.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근로자의날

제정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 등은 유인물 22쪽과 23쪽 상단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석현 의원, 권성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행정구역 단위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기능대학이 부설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기술교육대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류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 의원·류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유인물 24쪽과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의 제척 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다른 입법례를 고려하여 제척 사유를 일부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사발전재단의 사업에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권성동 의원·박민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 2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의 입장료 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부처 명칭 개편에 따라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명장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대한민국 명장의 선정 주체를 '노동부장관'에서 '정부'로 변경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인물 2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9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진폐위로금 지급을 위하여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둘째, 분진사업장의 대형 측정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셋째, 진폐관리구분 판정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권성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법률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권성동 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법안 심사를 하기 전에 축조심사 생략의 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정하여 심사하는 법률안은 소위 심사과정에서 각 조항별 축조심사를 하여 충분히 검토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기 전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석현 의원 2건과 양창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에 의사일정 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류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김용남 의원과 주영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에 의사일정 제9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 이상일 의원과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에 의사일정 제12항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김상민 의원과 주영순 의원, 인재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에 의사일정 제16항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1항까지 박성호 의원, 주영순 의원, 우원식 의원, 이석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에 의사일정 제22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김용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8항까지 부좌현 의원과 주승용 의원, 강창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에 의사일정 제29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정부가 제출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정부가 제출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정부가 제출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정부가 제출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39항까지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에 의사일정 제40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3항까지 부좌현 의원과 안홍준 의원, 홍익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42항과 제43항 대신 의사일정 제44항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부터 제47항까지 안홍준 의원과 홍익표 의원, 이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에 의사일정 제48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부터 제52항까지 황인자 의원과 양승조 의원, 권성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에 의사일정 제53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부터 제58항까지 권성동 의원, 양창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에 의사일정 제59항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과 제61항 김우남 의원과 장하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에 의사일정 제62항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정부가 제출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부터 제69항까지 안홍준 의원과 김영주 의원, 한명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에 의사일정 제70항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정부가 제출한 근로자의날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과 제75항 이석현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에 의사일정 제76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류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부터 제80항까지 이석현 의원, 류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에 의사일정 제8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과 제85항 권성동 의원, 박민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의사일정 제86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정부가 제출한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

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과 제92항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에 의사일정 제93항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오늘 의결한 법률안 등과 관련해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환경부 소관 61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주심에 따라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계획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지자체가 자의적·경쟁적으로 추진해 옴에 따른 폐단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물놀이형 수경시설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을 통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측정기기 수탁관리업체를 등록토록 함으로써 수탁관리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폭스바겐사의 임의 설정과 같이 부정한 방법에 의한 배출가스 인증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 외에 형사벌을 추가하는 한편 과징금도 현행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10배 인상하게 됨으로써 재발 방지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수 환경기술을 가진 국내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이 촉진되고 국내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경보건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지역주민 대상 외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같은 특정 인구집단도 역학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의 국내 이행 법률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의 개정으로 2016년 협약 발효에 앞서 국내 산업계 등과 사전준비를 보다 철저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방사능 물질 등을 포함한 유해 폐기물의 수입 금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환경정책기본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대강별 물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도법, 하수도법, 악취방지법, 습지보전법의 개정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해결함으로써 환경 관련 행정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안의 심의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영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히 법안심사소위원회 권성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환경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오늘 의결한 법률안 등과 관련해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안소위에서 법률안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보완해 주신 권성동 법안소위 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여 주심에 따라 건강보험 정보를 활용하여 모성보호 등 지원제도를 임신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안내하고 출산휴가 미부여 등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를 보좌하는 담당자를 두고 발주자의 책임으로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공인노무사 보수교육 시 직업윤리교육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하여 공인노무사들이 올바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개정으로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에도 제척되도록 하여 심판의 공정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고용 변동사항을 고용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도록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국제협력사업의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숙련기술장려법,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능력 중심 사회 구축을 위한 직업훈련 체계로 개편하는 등 직업훈련, 국가기술자격, 명장 선정과 관련된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과 연계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이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기본계획과 관련한 조문이 개정되어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이 법률에 한층 명확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근로자의날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의결로 법률 문구가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명확하게 정비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

신 법률안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9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
(이자스민·이한성·인재근·박인숙·정희수·안홍준·서상기·권성동·양창영·신경림 의원 발의)

9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양창영·김세연·이재영·정수성·김정록·박덕흠·최봉홍·김한표·홍문표 의원 발의)

96.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설훈·신계륜·부좌현·김성주·배재정·최재천·최원식·민홍철·변재일·홍익표·김관영·김영록·이인영·이철우·김한표·김동완·이완영·조정식 의원 발의)

9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홍철호·강은희·이종배·이상일·박창식·박윤옥·김태원·오신환·문대성 의원 발의)

9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양창영·김세연·이재영·정수성·김정록·박덕흠·최봉홍·김한표·홍문표 의원 발의)

9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인재근·전순옥·정성호·노웅래·진성준·오영식·우원식·장하나·최규성·노영민 의원 발의)

10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윤후덕·은수미·우원식·심상정·박원석·정성호·서영교·박남춘·최원식·이미경·이석현·김춘진 의원 발의)

10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박성호·이노근·이장우·김희국·김태원·이헌승·함진규·황영철·홍문표·이학재 의원 발의)

10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석 의원 대표발의)(이윤석·남인순·전순옥·윤후덕·임수경·윤관석·정성호·유성엽·박남춘·김상희·김경협·김광진·김을동·문대성·이우현 의원 발의)
10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윤후덕·은수미·우원식·심상정·박원석·정성호·서영교·박남춘·최원식·이미경·이석현·김춘진 의원 발의)
10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한정애·장하나·은수미·우원식·이석현·김영주·최규성·오영식·인재근 의원 발의)
105.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0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 의원 대표발의)(민현주·류지영·김희국·이만우·권성동·경대수·신경림·김명연·양창영·김정록 의원 발의)
10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인재근·장하나·최규성·이개호·오영식·박홍근·진성준·김경협·은수미·우원식 의원 발의)
1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김광진·김현미·안규백·신경민·황주홍·오영식·은수미·김용익·김기준·추미애·홍종학·우원식·인재근 의원 발의)
10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김희국·한선교·이한성·류지영·권은희·이종배·이완영·이종진·서상기·이철우 의원 발의)
11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추미애·조경태·이인영·최동익·김성곤·정세균·홍영표·오영식·이원욱·박광온·신정훈 의원 발의)
111.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장병완·조정식·정세균·안규백·심상정·유인태·정성호·김관영·한정애·이미경·이석현 의원 발의)
1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서상기·안상수·이정현·경대수·홍문표·김승남·신의진·이인제·이이재 의원 발의)
11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이종배·홍철호·서상기·조명철·이한성·윤재욱·유승우·전하진·서청원 의원 발의)
11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설훈·황주홍·김영록·홍종학·백재현·오제세·김승남·송호창·부좌현·權根希 의원 발의)
11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부좌현·박범계·우윤근·황주홍·안규백·정청래·김성곤·홍종학·이개호 의원 발의)
11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호준 의원 대표발의)(정호준·신경민·전순옥·장병완·김민기·윤관석·이개호·박광온·이찬열·박홍근 의원 발의)
11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 의원 대표발의)(민현주·안홍준·홍문표·류지영·조명철·이한성·유승민·이종훈·이학재·이만우 의원 발의)
11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이개호·김광진·문병호·김성곤·장병완·천정배·황주홍·송호창·백재현 의원 발의)
11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김을동·이종진·이재영·이명수·송영근·유승우·박성호·강석호·김태원 의원 발의)
12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추미애·조경태·이인영·최동익·김성곤·정세균·홍영표·오영식·이원욱·박광온·신정훈 의원 발의)

(10시54분)

○위원장 김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20항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7건의

법률안과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4항부터 제104항까지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습니다. 위원님의 노트북 바탕화면에 있는 제안설명 폴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1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손충덕 수석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4항부터 제105항까지 11건의 법률안과 1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환경부 소관 11건의 법률안과 1건의 관련 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환경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의 주요 내용을 법률에 상향 입법하려는 것으로, 법치행정의 원리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관리기준의 내용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이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부착한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해당 장치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는 데 반해 개정안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를 반납하는 대신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장치 반납에 소요되는 비용과 불편을 해소하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당초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을 장려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한 것을 감안하면 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이를 금전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보증기간 경과 시가 아닌 등록 말소 시에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물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종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그 내용이 유사하므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외래생물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위해우려종 지정 현황 및 지정 계획과 위해우려종의 관리계획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위해우려종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생태환경지도 작성 의무화, 녹지 및 소생태계 조성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도시생태환경지도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은 인구가 적은 시·군의 경우 작성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에 대해서는 환경보전 효과 제고를 위해 전문 업종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조경업과 유사한 업종을 신설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이원화된 수출입 폐기물 관리 규정을 일원화하고 신고대상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수입폐기물의 70% 이상이 신고대상 폐기물이며 이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재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출 가능성 우려로 신고대상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타당한 입법이라고 봅니다만 수입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일부 제재규정이 누락된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가지, 줄기 등을 임목부산물로 정의하여 폐기물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이 경우 임목부산물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방치폐기물로 남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이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활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보증 및 공제사업, 폐기물 관련 연구개발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지만 생활폐기물 처리의무를 공제조합이 대신할 수 없다는 점, 공제사업을 위한 출자금 납부는 영세한 처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폐기물에 관한 연구개발 등의 사업은 이를 수행하고 있는 협회 등의 단체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획을 수립하는 각 부처가 평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계획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중복 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나 법령에 규정된 계획에 대한 평가의무가 있는 계획수립 부처에게 대상계획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 및 생략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 의견제시의 건인 정부가 제출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립공원구역을 포함하여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할 경우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로 갈음하도록 하려는 것은 개발사업의 규모 등을 감안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국립공원 수를 확대하고 지구 내 국립공원구역에서 건축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자연보전이 목적인 국립공원 지정 취지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규제완화의 대상 및 범위를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도 법률의 명확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6항부터 제120항까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순서입니다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제

안설명을 대체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노트북 바탕화면에 있는 제안설명 폴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양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6항부터 제120항까지 1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6항부터 제120항까지 1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6항 민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기간 내 취업한 경우 현재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을 해당 취업기간에만 지급 정지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육아휴직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7항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노동조합의 최소 설립단위를 행정부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세분화하고 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입 범위를 5급 이하로 확대하며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 과정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8항 및 제109항까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중에 2쪽, 제108항 이인영 의원안은 최근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의무, 예방교육의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하게 하고 피해근로자 구제를 위해 가해자의 입증책임을 규정하여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다른 법률안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하단의 의사일정 제110항 및 제120항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정명령의 실효성 제고 효과와 이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쪽, 의사일정 제111항 김영주 의원이 대

표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동 협의회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기업 정책조정 위원회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키운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며, 사회적기업 정책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하단의 의사일정 제113항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을 근로자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부담 등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특정 정부사업 수행기관의 장애인 고용 부담을 이유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예외를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4항부터 제117항까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 가운데 제116항 정호준 의원안과 제117항 민현주 의원안은 사업주가 일정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 전자적으로 제출된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류 관리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조항을 함께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하단의 의사일정 제118항 및 제119항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가운데 제118항 유승희 의원안은 정부가 고용지원서비스를 하는 경우 취업애로 청년에 대하여는 교통비, 식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재에도 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미취업 청년에게 교통비·식비 지원의 취지로 지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9항 신상진 의원안은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에도 청년고용할당제를 적용하고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청년고용 확대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으나 다른 연령대의 구직자와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고용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해서는 부담금 관리 기본법도 병행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과 관련 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대체토론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국회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위원 PPT 준비를, 순서를 몰라서 아직 안 했는데……

○위원장 김영주 그러면 한정에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한정에 위원 저희도 PPT 준비해야 되는 데……

○위원장 김영주 아니 왜…… 준비들을 좀 미리 해 놓으시지……

○장하나 위원 아니요, 질의순서를 못 받았습시다.

○은수미 위원 제가 그냥 할게요.

○위원장 김영주 그러면 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위원 지금 노동법, 특히 비정규직 입법이 굉장히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지난 7일이지요, 월요일 오후 12시 30분경에 고용노동부 대변인실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72%가 기간제 2+2 연장에 찬성한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고용부장관께서 12월 8일 날 특별기고까지 하셨더라고요, ‘한국노동경제학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렇더라’……

그런데 제가 설문문항이나 이런 걸 보니 전문가라면 그리고 통계의 ABC를 알면 도저히 구성해서는 안 되는, 구성할 수 없는 그런 설문이에요. 아예 100% 찬성이 안 나온 게 이상한 설문이어서 사실 확인해 봤습니다. 거기 보면 보도자료에도 나왔듯이 ‘노동경제학회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공동으로 조사 의뢰 했다’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한국의 우수한 2개 기관이 이런 설문을 만드냐, 이상하잖아요?

노동경제학회 사무국에 의뢰를 했더니 답변이 왔어요. ‘이 조사와 관련해서는 사전·사후에 들은 적이 없으며 배경이나 내용도 전혀 모릅니다. 오히려 다른 경로로 사실을 알고는 당혹스러웠으며 학회장한테도 얘기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한

국노동경제학회 안 했대요.

그다음에 한국기교대는 뭐라고 했냐면 ‘대학과 무관하고 한 교수의 개인이 속한 학회 차원의 연구조사 결과이고 대학은 동 학회 및 조사 결과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명의 도용 및 참칭을 한 거예요. 보고를 받으셨나요, 고용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관련 학회에서 관련 조사를 했고 그 결과가 72% 정도 나왔다는 얘기는 보고를 받았습시다.

○**은수미 위원** 그런데 이 사실을 아셨어요? 제가 보도자료도 냈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학회 내부 일을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은수미 위원** 아니, 학회 내부 일이 아니라 학회는 한 적이 없다는 거고 기교대도 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기교대는 산하기관이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 그래서……

○**은수미 위원** 산하기관의 이름이 그렇게…… 아니, 고용부가 대변인실을 통해서 이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개인의 일탈이든 뭐든 간에 고용부장관께서 특별기고하신 내용이 개인의 일탈적 행위를 인용해서 혹은 사기를 당해서 혹은 교감을 이루어서, 이런 의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사를 해 보셔야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제가 기간제 근로자들 기간과 관련한……

○**은수미 위원** 아니요, 저는 답변을 그냥 요구를 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요, 그러니까……

○**은수미 위원** 조사를 해 보셔야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확인을?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요, 지금까지 제가 세 차례의 조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은수미 위원** 아니, 이 내용에 대해서 조사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설문문항이나 이런 건 다른 문제고요. 조사기관이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한 적이 없다는데 그리고 개인이랍는데, ‘교수 개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신 ‘금재호 교수 혹은 김주일 교수가 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런 조사는 돈이 많이 들어요. 일반 전화 설문 조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1000만 이상의 돈이 들었는데, 그러면

학회도 안 했고 기교대도 안 했으면 ‘어디서 돈이 났어?’, ‘그냥 교수가 마음대로 전업을 해?’, ‘고용부가 지원을 했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 봐 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와 관련해서 통계를 인용한 게 3개의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수미 위원** 아니……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은수미 위원** 인용한 건 알겠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제가 그 내용 안에, 예를 들면 고용노사관계 했을 때……

○**은수미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고용부 대변인님 여기 계십니까? 고용부 대변인 여기 계세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용부가 개인이 한 조사를 사기를 당했거나 공모를 했거나 그리고 또한 그 학회나 기술대학은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참칭을 했거나, 그런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다 유포가 됐어요. 그게 12월 7일, 8일이예요. 거기다가 고용부장관께서 이걸 특별기고까지 하셨네, 그러면 이건 국가적 사안이지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답변이 지금 안 나와서……

고용부 대변인 지금 계시지요? 어디 계십니까? 안 나오셨어요, 고용부 대변인?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아니요, 고용부 대변인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기 나오셔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대변인 안 일어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닙니다. 오늘 법안이라서……

○**은수미 위원** 대변인도 안 나왔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대변인은……

○**은수미 위원** 고용부 대변인실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식 조사’라는……

그러면 여기 기획부장이나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가 고용부장관께 보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확인을……

서 주세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입니다.

○**은수미 위원** 12월 7일 날, 월요일 날 고용부 대변인실에서 한국노동경제학회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공동으로 의뢰했다고 주장하는 자료를 그대로 보도자료로 배포를 하셨어요.

우선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장관께 ‘이런 조사가 있더라. 아이고, 이거 우리가 노동 5법 추진하려고 하는데 되게 좋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추정입니다. 보고를 하셨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경제학회의 누구로부터 혹은 기교대의 누구로부터 넘겨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넘겨받으셨습니까?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제가 알고 있는 바는 노동경제학회에서 관련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준비해서 고용노동부를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에게 배포하기 위해서 대변인실을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그러니까 대변인실은 그냥 거처간 거예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실질적으로 기자들한테 전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노동경제학회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내용에 대해서 기자들이 관심이 있다면 기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고용노동부……

○**은수미 위원** 예, 그러면 전달을 하셨어요. 그 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12월 8일 날 장관께서 특별기고를 하셨잖아요. 특별기고를 하면서 인용을 하시려면 적어도, 그러니까 믿으셨을 거라고 봐요. ‘노동경제학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이런 특별기고는 대부분 기획이 되잖아요. 갑자기 장관께서 특별기고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여기 보니까 매일경제인데 이거는 어떻게 기획 보고가 된 겁니까?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거는 제가 썼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리는 게 옳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예.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5대 입법과 관련한 설문조사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언론기관에서도 하고 학회에서도 하고 또 시민사회단체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통계 결과는 수시로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비정

규직만 해도 고용노사관계가 작년 말에 했던 것……

○**은수미 위원** 거기까지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나온 자료를 저는 그대로 활용을 했다 그 말씀 드립시다.

○**은수미 위원** 그때그때 나온 자료를 활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은수미 위원** 그 자료를 활용을 하셨는데 그게 사기를 당했거나 혹은 고용부가 저런 걸 하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사기성이 농후한 그런 자료다라는 게 입증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조사를 했고, 저는 이거 끝까지 조사를 할 겁니다, 누가 이런 행동을 감히 해서 고용부장관께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특별기고까지 하도록 만들었는지.

요즘 고용부가 40억 광고비까지 써서 이런 것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특별기고까지 하셨으니 광고비를 많이 세이브를 하셨어요. 그런데 신뢰와 진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은 사실이라도 제대로 있어야 돼서,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하시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용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니지요. 조사를 하십시오. 물론 저도 조사를 할 겁니다. 저는 학회 및……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인에게까지 의뢰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는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민간 학회에서 자기 내부의……

○**이완영 위원** 답변 안 해도 돼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자꾸 답변하시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내부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은수미 위원** 이게 내부 의사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거까지 우리가 확인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주** 자, 은수미 위원님, 시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위원** 특별기고를 하셨기 때문에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러니까 학회 결과로 나온 거니까 저희가 활용을 한 거지요.

○**이인영 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영주** 예, 이인영 위원님.

○**이인영 위원** 장관님 대답 들어 보니까 은수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소상한 과정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경위서 같은 것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러니까 발표를 할 때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거쳐서 한지까지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인영 위원** 아니,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거를…… 노동부 대변인이 발표했을 때 전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한테 소명서나 해명서 같은 걸 전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제가 통계자료를……

○**이인영 위원** 자꾸 논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요,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통계자료를 여러 형태로 활용을 하는데, 학회에서 한 것도 있고 시민단체하고 언론기관 하는데 ‘어디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다’라고 늘 그렇게 인용을 해 왔습니다.

○**이인영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질의응답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요.

그래서 그 경위서 같은 것을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고 다시 질의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장관님, 고용노동부 대변인이 발표를 한 거는 고용노동부 입장을 발표한 거니까 외부에다 공개할 수 있는 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대변인이 발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위원입니다.

노동개혁 5법이 지난 19대 정기국회에서 마지막 막으로 처리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번 마지막 12월 임시회에서 우리 여야가 노력하면서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력히 하면서 또 우리 법안소위가 합의가 돼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노동개혁 5법에 대해서 정부도 노사정 위원회 대합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묶이 되어 있는 우리 환노위에서 처리가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우선 장관님께서 정부의 노력, 쉽게 말해서 우리 국민과 노사단체나 또 특히 우리 야당 위원들에게 이렇게 노동개혁 5법 처리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히 역설하면서 협조를 구할 것 있으면 간략히 한번 소개를 해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이 5법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서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고 또 야당 위원님들께 제가 약속이 되는 대로 가서 법안 취지와 효과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위원님들이 회관에 별로 안 계셔서 쉽게 뵙기는 어려운데,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완영 위원** 특히 최근에 민주노총에서 파견직 근로자가 400만이 나올 거다 이런 주장이 있었죠?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이완영 위원** 그 주장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도 그거를, 우리가 현재 파견이 허용된 업종에서 그 업종의 파견근로자 비중이 1.33%다……

○**이완영 위원** 현재?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래서 일부 업종에 확대된다 그래서 수십만, 수백만이 늘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추계해 보면 정부·여당 안에 의해서 확대되는 범위로 하더라도 2만 명 이내일 거다, 그런데 거기에는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분이 한 40%, 그다음에 파견보다 더 어려운 용역이나 도급에 있는 근로자들이 그래도 보호받는 쪽으로 올라오는 게 한 60%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허용되는 모수 자체가……

○이완영 위원 선진국에는 보통 파견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몇 % 수준이죠?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파견에 대해서 전혀 규제를 하지 않는 미국이나 일본, 영국의 경우에는 영국이 1%, 미국이 2%대고요, 가장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프랑스가 오히려 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내용적으로 보면 특히 '사'자 달린, 그러니까 교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또 의료기사라든지 '사'자 달린 데가 파견이 더 획기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내용이 있죠?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게 맞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의 고용구조가 핵심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 그다음에 보조업무를 하는 기간·파견 이렇게 고정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IMF 이후에 15년 동안 고용구조가 대부분 정규직에서 기간·파견으로 갔다가 용역·도급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기간제법이나 지금 5대 입법으로 보완을 하자는 것은 악순환되고 있는, 용역·도급으로 흐르는 고용구조를 가급적이면 중간으로 그리고 무기계약직으로 끌어올리자는, 선순환 구조로 바뀌 가자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규직 일자리가 그 쪽으로, 다시 기간·파견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예를 들면 지금 병원의 간호사를 파견으로 쓴다, 현재 있는 보조가 아닌 간호사를 쓴다 또는 의사를 쓴다, 학교의 교사를 파견으로 쓴다 그럴 가능성은 저희들은 거의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리고 우리 뿌리산업 파견직에 대해서 특히 정부·여당은 도급이나 용역으로 근로자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쪽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처우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파견제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이완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런 확신이 있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측이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현재 경기 남부지역 뿌리산업 부분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으로 인해서 도급으로 가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소위 일시적인 업무 증가로 인해서 제조업에 6개월간 파견을 쓸 수 있다는 그 제도를 활용해서 파견을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쓰는 경우도 있고 해서 고용질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또 일할 우리 대한민국의 구직자들에게 대한 일자리 제공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2년 정도의 안정된 파견 일자리를 주게 되면 6개월 만에 바뀌는 부분들에 고용의 안정성도 가져올 수 있고, 또 우리가 동일직종에 대해서 비슷한 일을 하는 파견과 용역근로자를 비교해 봤더니 그래도 파견은 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14% 정도 임금수준이 높더라, 그러면 그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또 한편으로는 공익안에 의하면 제조업,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할 때, 지금은 파견을 하게 되면 그 파견근로자가 파견 간 기간 동안만 파견회사가 고용계약을 맺습니다. 2년이면 2년만 딱 맺어서 이 파견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파견회사와의 고용관계도 종료되는 형태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뿌리산업에 하게 되면 그 파견회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파견기간이 2년으로 제약되어 있다면 A 회사에서 2년, B 회사에서 2년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고용안정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근로자에게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감안해서 허용하는 게 옳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잘 들었고요, 기간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또 하나는 세계 어느 국가에도 제조업에 이렇게 파견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는 부분도, 제조업을 지나치게 하도급화 하는 현상은 어떤 형태로든 막아야 된다,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특히 비정규직 400만 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단체가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왜곡되게 나올 때는 정부가 특히 중요한 법을 개정하는 데 매우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예, 1분 더 하십시오.

○이완영 위원 기간제에 대해서 특히 노동계에서 크게 반발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로 현장에 나가 보면 '왜 기간제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물을 만들어서 2년 되기 전에 내가 그만둬야 되느냐'

냐, 그냥 회사도 계속 쓸 수 있으면 좀 쓰도록 하고 나도 계속 더 일하고 싶은데’, 저는 그 현장의 목소리를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노동계 일부에서 ‘이렇게 하면 기간제 근로자가 양산된다’, 이것은 절대 아닌데, 철저히 우리가 대국민 상대로 해서 제대로 좀 홍보를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전적으로 이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당사자들은 기간 연장을 해 주면 현재 일하는 일자리에 정규직 될 가능성도 조금 더 높아지고 또 여기서 내가 정규직이 안 된다 하더라도 3, 4년 경험, 숙련도가 쌓여 있기 때문에 동일한 업종의 다른 회사로 바로 정규직 취업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가장 강하게 하고 있고요. 더더욱이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호봉제다 보니까 비슷한 일을 시작했지만 정규직은 4년 정도 되면 임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기간제의 경우는 2년마다 옮겨 다니기 때문에 옮겨 간 회사에서 다시 1호봉을 받거든요. 그래서 임금 인상이 안 되고 있어서 최소한 임금 인상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기간은 우리한테 맡겨 주거나 아니면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상급단체를 통해서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입법을 할 때 사유제한을 하거나 기간을 짧게 가자는 게 노동계의 논리였고 기간을 제한하지 않거나 기간을 길게 가자는 게 경영계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간을 늘리면 마치 경영계를 위해서 늘리는 것이 되고 기간을 줄이면 노동계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초기의 그 논리가, 8년간 시행한 효과에 대한 소위 악영향에 대한 부분의 고려 없이 그 논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의원 장하나입니다.

노동부장관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장관님께서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만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여러 차례 언론에서 하셨는데요.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는 ‘유연성’이라는 말은 잘 안 쓰고 노동시장의 핵심규율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이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경영계가 저희한테 유연성을 요구했는데요……

○**장하나 위원** 제가 검색을 해 봤는데 장관님께서 9월 14일 연합뉴스에서도, ‘공정성’ ‘유연성’ 이렇게 동시에 2개 같이 쓰시는 건 맞아요.

노사정 대타협 설명자료에도 ‘노동개혁을 통해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한다’고 되어 있고, 머니투데이에서도 보면 ‘기업의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비정규직 쓰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도 하셨고, 제가 발언을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니까요.

아주 최근에 MBC하고의 인터뷰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유연성 차원에서 쓰는 것은 선진국에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보고 그 대신 인건비 때문에 비정규직 쓰는 것은 안 된다, 막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서 유연성은 세계적 추세니까 거부할 수 없다, 그 대신 임금을 저임금이라든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일정부분 존재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렇지요. 대통령께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인다는 말씀을 몇 차례 했고요. 제가 언론 검색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유연성도 유연성이지만 저임금을 동반해서 유연성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관님?

EU나 다른 국가들은 노동 유연성만을 제고하는 게 아니라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유연안정성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안에 안정성 장치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안정성 장치를 갖고 계세요?

안정성 장치를 가져야 된다고 제가 요청드리려고 했는데 있다고 하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것이죠?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쪼개기 계약을 못 하게 한다든지 또 생명·안전에 관한 부분은……

○**장하나 위원** 생명·안전 부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또 2+2도 본인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 4년은 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장하나 위원** 안정성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장하나 위원** 화면은 같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뒤에 계신 분들도.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아주 최근까지, 2014년까지의 OECD 주요국의 노동이동률 평균이라고 해서 업계의 최근 자료입니다.

여기를 보면 노동이동률 평균 70%로 한국이 가장 수치가 높지요? 우리가 예를 들었던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하고도 비교해서도 이미 우리가 노동 유연성이 높다는 수치인데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죠.

이것은 OECD 회원국 중에 5년 이상 근속자 비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국이 칠레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 격차도 높아요. 그러니까 근속자가 너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것은 1년 미만 근속자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같은 일자리에 1년도 못 있는 근로자가 높다는 수치인데 이것도 터키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칠레랑 같고요.

기간제·파견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너무 규제가 소위 많다라는 지적들을 지난 전체회의에서 우리 정부도 그렇고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저는 그것도 확실한 데이터에 입각한 주장이라고는 인정은 합니다.

(김영주 위원장, 이인영 간사와 사회교대)

각 나라에서 파견제·기간제 규제가 있다, 없다는 그 사실은 맞는데, 문제는 그런 규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래서 그 나라의 결국 유연성은 어떤가 결과를 보자는 것인데요.

저는 대한민국은 왜 그러면 규제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연성은 이미 이렇게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가, 그러면 원인을 따져서 찾아야 된다고 봐요. 이미 우리는 규제의 유무를 비교할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유연성이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높아서 더 풀어줄 것도 없다는 현상을 직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대한민국 비정규직 노동자들 양극화해서 고통받고 있는지, 그러면 다른 나라는 규제가 그렇게 많은데도, 파견·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은데도 저임금 또는 이런 노동 양극화 문제를 왜 겪고 있지 않은지, 원인 진단을 잘못해 왔다 또는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혹시 지금 이 앞의 자료들은 장관님은 처음 보십니까, 아니면 알고 계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몇 개 자료는 제가 대부분 본 자료들입니다.

○**장하나 위원** 보신 적이 있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장하나 위원** 이게 OECD 홈페이지에서 제가 그냥 따온 자료인데, 지금 국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이미 노동시장 유연화가 이루어질 대로 이루어진 국가라고 하는데 아직도 더 유연화 해야 될 부분이 어디에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OECD에서 분석한 부분에 의하면 제도적인 부분과 관행적인 부분이 나뉘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개인해고제도는 우리가 경직적인 축에 속하는 걸로 OECD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평균에 거의 근접해 있죠. 그것 저도 봤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평균보다 더 경직적인데 가 있고……

○**장하나 위원** 그것도 두 가지 방법으로 보는 것 저도 봤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집단해고제도는 제도 상으로는 우리가 유연화 쪽에 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해고제도가 경직적으로 가 있는 요소의 상당부분을 파견법과 기간제법 규제가 많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앞서……

○**장하나 위원** 그런데 저도 같은 자료를 본 것 같은데요, 장관님하고.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경직적인데 결과적으로 유연성은 높다라는 것은 두 가지지요. 제도는 있는데 우리 노동부가, 정부가 그 제도대로 행정력을 발휘 못했다 아니겠어요? 제도는 다른 나라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유연성하고 이동성하고는 좀 다른 얘기라고 봅니다.

○**장하나 위원** 제가 얘기를 할 때 막 끊고 답변은 하지 말아 주시고요. 위원장님께서도 좀 지적

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대리 이인영 그렇게 해 주세요.

○장하나 위원 제도가 다른 나라보다 경직되어 있다는 이 같은 자료의 평가는, 그러면 제가 장관님과 같은 자료를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유연성은 높다고 나왔으니까 그러면 제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 그리고 아까 이완영 위원님과 질의 중에서 그런 얘기 하셨는데, 프랑스는 우리보다 파견 관련해 가지고 제도는 훨씬 느슨하지만, 비교를 하셨죠? 그래도 파견근로자들이 우리보다 많다고 하셨던가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래서 파견근로자들이 많고 적고를 볼 것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미 유연성이 이렇게 높은데 왜인지 이런 것 원인을 파악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파견근로자의 삶의 질 부분도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프랑스는 산별노조 단협상의 적용률이 높지 않습니까? 대한민국하고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주 다른 노동환경이 있지요. 그것만 보더라도요……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랑스하고 한국이 너무 노동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장하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파견기간 제도만 따로 떼어 놓고 ‘아, 이런 나라도 이렇게 파견기간제의 규제가 없는데 한국만 있다’ 이렇게 하나만 떼어 보는 것은 저는 정부 측도 그렇고 이 자리의 환노위원도 그렇고 다 수치 이면의 내용까지 아는 분들이 너무 불필요한 논쟁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고민되는 것은 저는 유연성을 더 늘리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이미 유연성은 충분하다, 그리고 안정성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대안들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아까 안전에 대한 부분에 규제 늘리는 것, 쪼개기 계약 막는 것 몇 가지 얘기하셨고 2+2도 그런 취지라고 하셨는데, 저는 일단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대원칙이 좀 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에만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대한민국은 법에

있어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적인 조치가 안 되면 있는 법도 사실 사문화되니까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지금 한국에서는 더 이상의 유연화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정규직이 많아도, 비정규직 노동자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대한민국은 현재도 안 되는데 더 늘리면 어떻게 그것을 장관께서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이신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걱정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노동의 이동성하고 유연성은 좀 차이가 있다고 보이고, 저희들 5대 입법에 유연화하기 위한 무슨 제도개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장하나 위원 아, 기간제·파견제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기간제를 늘려 주는 게 유연화라고 저는 보지 않는데요.

○위원장대리 이인영 자, 되셨으면 다음으로……

○장하나 위원 장관님,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렇게 답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요, 저희가 이 5법을 개정하는 목표가……

○장하나 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장관님은 안 보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겠습니까?

○김용남 위원 시간 다 되었으니까 그만하세요.

○위원장대리 이인영 아니, 장관님이 계속 대답을 하시니까 이게 길어지는 거지. 김용남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1초만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정하는 목표가 지나치게 용역, 도급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된다……

○위원장대리 이인영 장관님, 지금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질의에 대답하시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

○위원장대리 이인영 다음……

아니, 장관님이 자꾸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진행이 이상하게 되잖아요.

다음 이인제 위원님 질의순서인데요. 질의하시

겠습니까?

○이인제 위원 다 마치고……

○장하나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이인제 위원 1분만 더 마무리하시고……

○장하나 위원 아, 아닙니다. 저 마무리해도 되고요.

○위원장대리 이인영 예.

○장하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때 어느새 인가 질의하는 위원님 외의 분들이 도중에 발언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가 판소리 한마당도 아니고 추임새 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그때도 발언권을 좀 얻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용남 위원 질의시간 끝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질의시간 중에 한 게 아니고요.

○장하나 위원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라는 얘기 중에도 추임새를 하시는데요.

○위원장대리 이인영 지금 상임위에서 자꾸 위원님들 상호 간에 얘기하는 이런 것은 좀 자제합시다. 우리 국회에서 할 일도 아니고 그런 것……

다음은 이인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인제 위원 고용노동부장관님, 허심탄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내용에 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자세하게 토론이 있을 거고요.

지금 야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절,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장관님은 뭐 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때 노사정위원회 운영국장을 하면서 비정규직 관련 논의를……

○이인제 위원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때 여러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고용정책 노동시장정책관에 해당되는 고용 총괄하는 심의관도 했고……

○이인제 위원 장관께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잔뼈가 굵어 수장에 올라와 있는 분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이인제 위원 이번의 노동개혁 5법 법안 내용을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돼서 만들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렇습니다.

○이인제 위원 발의는 우리 당 의원들 이름으로 했지만 개혁안은 고용노동부가 만들었습니다.

그것 만들 때 고용노동부에 축적된 자료든지 또 고용노동부를 돕고 있는 싱크탱크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우리 노동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실용적인 자세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정치권, 청와대라든지 당이라든지 이런 외부에서 특별히 뭐 주문을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간에 우리가 시장을 본 종합적인 자료의 축적을 토대로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이인제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보시자고.

내가 봐도 이번 개혁안 내용은 굉장히 기술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지 무슨 정치적인, 가치적인 접근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이인제 위원 이 개혁의 목표는 어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노동시장 또 경제위기는 노사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이 심화돼서 생긴 위기가 아니지요? 그런 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인제 위원 지금 경제 전체의 성장률이 자꾸 침체되고 일부 주력산업들이 힘을 잃고 또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그래서 요즘 매일 보도가 나옵니다. 상장기업의 30% 이상이 이자를 갚지 못해, 이 수입을 가지고…… ‘좀비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집이 무너지는 위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반전을 시킬 수 있겠느냐, 그래서 노동시장의 불명확한 것을 명확하게 해 주고 갈등과 투쟁보다는 상생과 협력으로 이렇게 바꾸고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규제는 좀 합리화를 해 보자 이래서 고용노동부가 아주 현장의 실태를 바탕으로 만든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이인제 위원 한 치의 오차도 없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이인제 위원 정치권이나 어디 이런 데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 받고 한 것 아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인제 위원 그래서 엇그제 어느 노동단체, 민주노총인데 ‘노동개혁법이 악법이다. 그리고 이것을 폐지시키기 위해서 총파업을 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저는 고용노동부가 당당하게 그 노동단체를 비롯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 또 국민을 향해서 아주 솔직하게 말이에요 이 위기의 정체하고, 그래서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아주 실용적이고 기술적인 접근을 한 것에 불과하다 이것을 잘 설득을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겠습니다.

○**이인제 위원** 그런데 지금 총파업 어떻게 됩니까? 입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은 이것 합법적이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간의 판결에 의하면 이것은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인제 위원** 불법이지요. 그래서 이런 불법파업을 하지 않도록 노동단체 또 하위 각 노동조합에도 지도를 사전에 충분히 하셔서 가지고…… 16일이 벌써 내일인데 이런 불법파업을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제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간제법에서 35세 이상 근로자가 원할 경우에 또 회사가 원할 경우에 2년간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지금 기존의 정규직에 일하는 근로자의 일자리 또 앞으로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정규직 일자리로 나와야 될 그 일자리를 위협하는 게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 부분은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인제 위원** 저도 그런 위협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또 하나, 파견제 근로에서 특히 문제를 많이 삼고 있는 뿌리기업에 대한 파견은 어떻습니까? 그게 기존 제조업에 있는 정규직 일자리를 위협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지금 뿌리산업의 경우는 직접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인제 위원** 그러니까 주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라인이라든지 또 큰 규모의 1차나 2차 벤더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제조업 정규직 일자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이인제 위원** 그 밑에 있는 영세한 뿌리기업의

경쟁력이 커지면 오히려 그 위에 있는 제조업 일자리가 더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협력관계에 있으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경쟁력이 올라가면 서로 상호 상승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인제 위원** 그렇지요.

시간이 다 됐는데 자세한 것은 나중에 법안심사 할 때 또 계속 질의하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에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한정애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입니다.

PPT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하기 전에 잠깐, 아까 존경하는 은수미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 중에서 한기대 교수가 한기대 입장이 아닌데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경제학회장의 이름으로 '한기대'라는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보도자료를 내고 이렇게 한 경우에 노동부 산하 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어떤 방식이든지 징계·중징계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뭐 하고 있나요? 그런데 이분은 그 이후에도 보니까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도 하시고 막 이라고 계시던데?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 해당 교수가 그전에도 비정규직 부분에 많은 연구를 했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한정애 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제가 묻는 질문하고 좀 안 맞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또 본인이……

○**한정애 위원** 그러니까 노동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내용이 나온 것과는 별개로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아닙니까? 공공기관이 기관의 장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공공기관의 명칭을 도용해서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한기대 관할하고 있는 국이 어디시지요? 이것 빨리 조치를 취하시고요.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시고 저희 위원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실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국장님, 그냥 거기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나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박종길** 직업능력정책국장입니다.

제가 그 관계 내용을 잘 몰라서요, 확인을 해 보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관계 내용을 모르시면…… 노동부가 지금 이 상황이 엄중하고 심각하고, 특히나 여기서 발표한 자료 보면 노동부가 얼마나 좋아할 만한 자료인데……

원래 제 질문이 아닌데 제가 하나만 이것 읽어 드릴게요.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문2, ‘면접원 천천히 읽어 주세요’ 이렇게 돼 있고, ‘현행법상 사업주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년 근무 후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계속 근무할 수 있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계약이 종료되게 됩니다’……

우리 법상 자동 해지가 되게 돼 있나요, 2년 이후에?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우리 법에는 정확히 ‘2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이인영 간사, 김영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정애 위원** 그렇게 돼 있지만 ‘자동 해지’라는 말은 없지요. 계약이 종료된다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도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요.

○**한정애 위원** 그것은 없고요.

장관님,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그것을 기술교육대학의 명칭을 써 가지고 하는 것이 정말 문제가 큼니다. 이것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웹툰 한번 보시지요.

노동부가 이번에 여기에 돈을 얼마나 투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겁니다. 파견법 관련해서, 기간제법 관련해서 한 것이지요.

2년 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 면담을 합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요새 회사가 어려워서 정규직 전환이 안 됐다네. 법적으로 계약기간을 더 연장할 수도 없다네.’

계약만료를 앞두고 그동안 눈치를 봐야 했던 저 대신 동료들이 제 눈치를 보네요. 내 나이가 마흔다섯 살, 계약만료로 짐을 싣 게 벌써 몇 번인지……

2년간 한술밥 먹었던 동료들의 위로를 뒤로 하

고 이번 회사에도 이렇게 마지막 퇴근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일하고 싶지만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기 때문에 마지막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던가? 걱정마, 더 좋은 데서 오라고 할 거야. 이 나이에 누가 불려 줄까요? 계약직이라도 더 일할 수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알기에 노동부가 나섰습니다. 노동개혁이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이제 법이 바뀐다며? 정부에서도 저 같은 처지를 잘 아시겠지요?

든든한 일자리를 위한 희망의 노동개혁이 계속됩니다. 오늘도 마지막 퇴근하는 비정규직을 위해서 응원해 주세요’……

여기서 노동부의 역할은 저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과정에서.

‘2년이 지나고도 자네를 더 계약할 수가 없네’…… 그 일자리가 상시적으로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사실은 거기에 계속 근무하는 게 맞지요, 정규직이 돼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가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공공부문도 2년 상시적 일자리는 하고 있고 또 민간이 전환을 하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한정애 위원** 법을 지키게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요, 법이 아니고……

○**한정애 위원** 단속을 하거나 한 적은 별로 없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우리가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민주주의국가에서?

○**한정애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9명 중에 한명 정도는 정규직이 되고 안 돼서……

○**한정애 위원** 장관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한정애 위원** 기간제 노동자 중에서 고용 기한 2년을 채우는 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2년 비중이……

○**한정애 위원** 2년을 채우는 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전체 280만 중에 1년 미만이 칠팔십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년이 한 78만 명 정도 됩니다, 2년.

○**한정애 위원** 1년 미만이요, 전체 기간제 노동자의 규모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1년 미만이…… 그것도 팔구십만 정도 되고요, 2년 넘는 근로자들이 그것도 80만 명 정도 되고, 나머지가 1년에서 2년 사이 그렇습니다.

○**한정애 위원** 노동부가 자료가 별로 없습니까, 그렇지요?

전체 기간제 노동자 지금 한 370만 정도 되는데서 보면, 통계청 발표 지난 11월 달에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거기에는 한시적 근로자까지 다 포함된 개념이고요.

○**한정애 위원** 기간제 노동자의 57%가 1년 미만이고요, 77%로 보면 3년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제 위원님께서 정확한 자료 축적을 토대로 법안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동부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가 여러 가지, 통계청 자료도 있고 저희 자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정애 위원** 대체적으로 통계청 자료와 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저희가 취합해서 한 결과에 따르면 한 직장에서 2년 고용 기한을 채우는 노동자가 한 30% 왔다갔다 이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노동부도 얘기는 합니다. ‘이 중에서 20%는 2년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한정애 위원** 그리고 통계청이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근속이—평균 근속입니다—57% 막 이렇게 1년 미만으로 나가는 분 빼고도 29개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것은 한시적 근로자가 팔구십만 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정애 위원** 29개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런데 거기에 한시적 근로자……

○**한정애 위원** 기간제……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요, 통계를 말씀

하시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한정애 위원** 한시적 근로자도 보호 대상입니다, 그렇지요? 자꾸 노동부가 여기에 대상되는 사람만, 여기에 대상되는 사람만 이렇게 해 가지고 말 것은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거기에 한시적 근로자는 기간 제한이 없는데 본인 스스로 계속하기 어렵다고 답한 분들입니다.

○**은수미 위원** 한정애 위원님이 질문도 안 하는데 발언자 답변하는 것도 저는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한정애 위원** 제가 이기권 장관님의 저런 답변 방식을 한두 번 본 게 아니라서 이제 저도 적응이 거의 됐습니다.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29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청 조사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라고 하면 상당수 기간제 노동자들이 해고되지 않고 기간제로 계속, 뭐 한시적이건 포함해서 계속 근로가 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도 발표하듯이 어쨌든 2년이 되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20% 남짓 30% 미만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을 4년으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2년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는 20~30% 그 사이의 사람들마저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해 버리는 법안을 내신 겁니다, 사실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가능성이 크다면 당사자들이 ‘우리 2년을 연장해 주세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한정애 위원** 또 여기다가 노동부의 직무유기가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업장의 단체협약을 살살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뒤졌습니다. 거의 매년 단체협약을 조사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업 노동자, 특히 기업 노동자들 간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인상 폭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도 알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제가 지난 국감에 자료 달라고 그러니까 자료도 못 내셨어요.

대기업 정규직이 노조 이기주의에 파묻혔다라고 계속 비난만을 퍼부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대기업들이 임금교섭을 할 때 비정규직을 위한 협약,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이 없게 하기 위한 지도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한정에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한정애 위원 노동부가 이렇게 사업주들이 비정규직 남용하게끔 하고 차별을 방치하게끔 하는 역할을 노동부가 제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상화된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비정규직이 이렇게까지 늘어나고 남용되는 과정에 있어서 노동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 역할을 못해서 늘어난 비정규직에 대해서 이제 그냥 그것을 합법화 하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기간제법을 내신 겁니다.

○위원장 김영주 한정에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완영 위원 혼자 다 해요, 그냥 계속.

○우원식 위원 아이 참, 그렇게 하지 말아요.

○이완영 위원 발언 시간을 지켜야지, 한 사람 말이.....

○우원식 위원 그것은 맞는 얘기지만 위원들끼리 그렇게 하지 말아.

○한정애 위원 저 홍보 영상 주인공은 45살이 되도록 정규직이 되지 못했는데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45살이 된 사람에게 노동부가 내민 카드가 뭐였냐 하면.....

○위원장 김영주 나중에 추가질의, 질문 시간 받아서 하십시오.

○한정애 위원 4년짜리 비정규직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우리는 그분들 입장에서서 판단하는 게 가장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주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들 입장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한정애 위원 추가질의 3분 정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예, 나중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

○우원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영주 우원식 위원님!

○우원식 위원 이렇게 위원들끼리 비아냥대듯이 이야기를 하면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위원들 이야기하는데 장관 답변 태도 때문에 잘 끝나지지 않고 자꾸 이렇게 꼬투리가 이어지는데 장관께서도 꼬투리가 이어지지 않게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똑 부러지게 하시고요. 얘기할 때 중간에 끼어들면 자꾸 그게 꼬투리가 이어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위원 질의가 시간을 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을 빨리 진행 과정을 알면서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하면 감정들이 점점 상해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시더라도 다른 위원 질의할 때 중간에 끼어서 이러쿵저러쿵 위원들끼리는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께서도 하실 말씀 많겠지만 한정에 위원이 질의에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께서 얘기하시는 것에, 설명하는 것에는 그냥 참고 계시고 질의할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우리 환노위가 5대 노동법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나 언론들이나 또 당사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감정들을 조금씩 자제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러면서 우리 상임위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정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위원 다음 전데 왜.....

○위원장 김영주 자리에 없어서 나중에 주기로 했어요.

○권성동 위원 아니, 아니에요. 여, 야, 여, 야 이렇게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심상정 위원 아니, 무슨 소리예요?

잠깐만요.

○위원장 김영주 잠깐만요.

의사진행은 위원장이 하는데.....

○심상정 위원 어디 조정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주 아닙니다. 아까 권성동 위원께서 앞 질문 자리에 있었는데 신청 받을 때 잠깐

자리를 뜨셨기 때문에……

○**심상정 위원** 다른 분이 했지 않습니까, 다른 분이?

○**위원장 김영주** 지금 여야 균형 맞추기 위해서 제가 발언권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위원 하시고 심상정 위원 드리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아니, 그냥 질의하십시오.

○**권성동 위원** 질의시간 도중에 들어와서……

○**심상정 위원** 질의가 뭐 따로 필요해요? 전부 의사진행발언으로 다 이야기해 버리는데 무슨 질의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순서가 있으면 순서대로 지켜주셔야지, 작은 당의 하나는 순서 잡으려면 엄청나게 힘든데 그렇게 임의적으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 순서가 있는 건데?

○**위원장 김영주** 이 순서에 대해서는요 심상정 위원님, 상임위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하는 건데 아까 하실 때에 야당 위원들만 하셔서 여당 위원들이 본인들이 하시겠다고 중간에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차례대로 집어넣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성동 위원** 위원장으로부터 질의 허가를 받고 질의를 하려고 하는 도중에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질의를 막는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심상정 위원** 아니요, 그것은 저한테 통보가 안 됐습니다. 진행 순서가 달라져 있으면 보고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물어보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권성동 위원** 그러면 제 질의시간이 끝난 다음에, 심상정 위원님, 제 질의시간이 끝난 후에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위원장한테 항의를 하셔야지요.

○**심상정 위원** 제가 요청을 드린 거잖아요. 제 순서로 되어 있는데 지금 권성동 간사를 부르니까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권성동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인제 위원** 이제 권 위원님, 질문 하세요.

○**권성동 위원** 5대 입법, 노동개혁 5대 입법 중에 기간제법과 파견제법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렇지만 기간제법과 파견제법과 관련해서 노사정위원회의 공익위원 의견이라고 해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그것하고 합해서 우리 당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합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기간제법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노동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노동자를 위한 법이지 노동자를 탄압하는 법이 아니에요.

우선 기간제법 개정안의 첫 번째가 뭐냐? ‘생명·안전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것이 기간제 근로자한테 불리한 내용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닙니다. 노동계에서도 지금 절실히 요청하고……

○**권성동 위원** 요청하고 있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다음에 공익위원안에 보면 2년 내에 3회 이상 쪼개기 계약을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임금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주의 횡포를 막기 위한 법이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권성동 위원** 그게 근로자에게 불리한 법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것은 작년에 슬픈 사건을 당하고 노동계에서 강력히 희망해서 정부도 그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리고 35세 이상 근로자에 한해서 그것도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금 2+2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35세 이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이 지금 얼마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9.2%입니다.

○**권성동 위원** 나머지 약 91%에 가까운 근로자들은 2년이 지나면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또 구직 전선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 부분의 항의를

저를 포함해서 정부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관여해서 내가 자꾸 다른 데로 옮겨 다녀……

○권성동 위원 그러니까 사용자가 원할 경우 절대로 안 되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 그것도 35세 이상에 제한해서 그리고 4년으로 연장될 경우에 퇴직금 외에 10% 이직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4년 지난 후에 조금이라도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 보고 또 기간제 전체의 사용률을 줄이기 위해서 이직수당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근로자한테 불리하다고 주장하는지 정말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공익위원안에 또 새로운 내용이 하나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1년 미만 근로자들에 대해서……

○권성동 위원 근로자에게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하지 아니하던 것을 퇴직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전체 비정규직 비중을 줄이고 인건비 절약하는 차원에서 비정규직 쓰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넣었습니다.

○권성동 위원 이 기간제 근로자법이 왜 근로자한테 불리하다고 주장하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 봐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뿌리산업, 파견제법의, 파견근로자법의 개정 내용 중에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면 여기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뭐라고 주장했냐 하면 뿌리산업 파견 허용에 대해서 ‘대기업도 파견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주장한 것 알고 계시니까, 민주노총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 뿌리산업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권성동 위원 거기 보면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 현대위아, 현대제철 당진 공장—소성가공 공장이고요—, 기아차 소재 공장(주조), 현대미포조선 모화 공장—용접 공장입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곡 공장—용접 공장이에요— 이 대

기업 사업장도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대기업까지 파견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민주노총에서 주장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권성동 위원 이게 사실입니까, 허위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닙니다. 그 회사의 공장은 다 조선업 또는 자동차산업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권성동 위원 그러니까 민주노총의 주장이 사실이에요, 아니면 개정안에 따르면 사실이에요, 아니면 허위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이 옳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는 중소·중견 뿌리산업으로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김영주 위원장, 이인영 간사와 사회교대)

○권성동 위원 우리가 낸 개정안에 보면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뿌리기업에 파견을 허용하는 건데 이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뿌리기업이라는 것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그다음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래서 대기업에 설치되어 있는 소성가공이나 용접 공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민주노총에서 허위 사실을 갖고 호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요, 제가 이 뿌리산업 현황을 한번 죽 찾아봤어요. 뿌리기업 현황을 찾아보니까 전체한 2만 6000여 개 되는데 종사자가 한 42만 명 됩니다. 그중에 10인 미만 사업체가 68.4%예요. 그리고 10인에서 50인 미만이 25.2%, 50인 이상 300인 미만이 6.1%입니다. 대다수가, 대다수가 영세·중소기업입니다. 10인 미만입니다. 여기의 인력난이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나는 인력난 해소하고 국내, 주로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채용, 국내 근로자들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서 뿌리산업에 한해서, 이 뿌리산업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산업입니다. 이 뿌리산업이 무너지면 나머지 제조업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한해서 한번 파견을 허용해서,

여기 주로 도급으로 다 운영되고 있는 이 실태를 파견으로 돌려서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임금도 좀 올리고 인력난도 좀 해소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저희 목적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이것이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근로자를 위한 법이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기업을 위한 법이에요. 그것도 중소기업을 위한 법입니다. 우리가 항상 중소기업 살리자고, 국회에서 국회만 열면 국회의원들이 입을 모아서 중소기업 살려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이 기간제법이나 파견제법도 근로자를 위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산업 전체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명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처음에 노동시장 개혁을 할 때 경영계가 저희한테 요구한 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유연화 쪽의 요구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우리가 봐서 유연화보다는 공정·투명하게 하는 게 옳다라고 봤고.

지금 말씀하신 비정규직 관련 법은 그 근로자들 입장에서 도와줄 수 있는 시각에서 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년에서 2년 늘리는 건, 단순히 2년 늘리는 거는 경영계가 요구를 했지만 거기다 이직수당을 줘서, 소위 말해서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경영계가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쪼개기 계약 근절이랄지 1년 미만 퇴직금 주는 사항이랄지 또 생명·안전 분야 비정규직·기간제 채용 못 쓰게 하는 부분은 경영계가 비용 때문에 다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간제법은 대부분 경영계가 반대하고 있고, 노동계는 이제 투 플러스 또 하나를 반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이 시각은 현재 거기에 일하고 있는 분들 시각에서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은수미 위원 의논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대리 이인영 아니, 제가 지금 위원장 대신 잠시 사회를 보고 있는 상태라서 제가 일방적으로 정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심상정 위원 아니 저기요, 저도 바쁘니까 빨리 좀 합시다.

○은수미 위원 추가, 그러니까 오후에……

○권성동 위원 심상정 위원 하면서 얘기해.

○위원장대리 이인영 예, 그래서……

○은수미 위원 오후에 전체회의를 속개를 합시다.

○심상정 위원 몇 번을 지금 뭐……

○권성동 위원 심상정 위원 일단 질의하고.

○심상정 위원 바빠서 그래요.

○권성동 위원 의사일정 결정하면……

○위원장대리 이인영 예, 그래서…… 아니요, 제가 그래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심상정 위원님 질의하는 사이에 위원장 오시면 의사일정을 좀 확인해 드리겠다고 대답을 하려고 그랬던 거니까 저한테까지 화를 내시지는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 순서니까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심상정 위원 11일 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반해고지침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심상정 위원 언론보도를 보니까 애초에 정부가 예고했던 일반해고지침을 넘어서서 채용·평가·보상·능력개발·퇴직까지, 근로 전반에 걸친 능력 중심 인력운용 방안을 핸드북 형태로 해서 12월 중에 확정 발표하고 또 제작해 가지고 사업장에도 배포할 거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됐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심상정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언제 지침을, 어떤 내용을 발표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가 노사정 합의할 때……

○심상정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 그러니까 정부가 준비를 해서 준비가 되면 노사와 충분히 협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에서 용역도 썼고 용역 결과도 발표도 하고 지금 정부 나름의 안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노사한테도 협의를 하자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심상정 위원 그래서 지금 9·15 합의문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겠다, 노사가 충분히 협의를 거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협의 계획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 협의를 하기 위해서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정부가 두 번 이상 협의하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노사한테 개별적으로 정부가 협의를 하자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런데 협의하자는 요청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직은 특별히 응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심상정 위원 왜 응하지 않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거는 내부 사정이라 저희들이 뭐……

○심상정 위원 내부 사정이 아니라 노동5법이 노사정 합의 내용에 합의에 따라서 정부 방침을 바꿀 때 한다고 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노사정위원장도 지금 장관급인데, 노사정위원장도 지금 합의가 되지 않은 기간제나 파견법은, 이런 비정규직 관련 입법은 시간을 갖고 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만 지금 노동 관련된 책임자가 아니고 노사정 합의와 관련해서는 노사정위원장이 책임자인데 노사정위원장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이것을 묵살하고 마치 다 합의가 되었다, 또 기간제법이나 파견제법이 공익위원들도 아니고 공익전문위원들 의견을 갖고 의원들한테 와서 흔들면서 합의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태도는 정말 좀 박근혜정부의 난맥상을 보는 듯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 입장에서 당연히 노사정 당사자인데 자기들하고 합의한 거, 어떤 거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어떤 거는 하자 그렇게 하면 그게 동기가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노사정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노·사·공익 의견을 저희 정부한테도 보내고 국회한테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노사정위원회에서도 공익 의견을 보냈다는 얘기는……

○심상정 위원 노사정위원회에서 보낸 게 공익위원안도 아니고 공익전문위원들의, 전문위원…… 여기 지금 우리 국회에서 상임위원 때 전문위원 보고서 가지고 여기 상임위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 문제를 1년 이상 논의했던……

○심상정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공익위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노사가 함께……

○심상정 위원 공익위원들의 의견이 아니라 공익전문위원들의 의견서지요, 저희한테 전달된 것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어떤 형태로든 그 논의를 해서……

○심상정 위원 아니, 어떤 형태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충분히 저는……

○심상정 위원 이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들의 의견서가 환경노동위원회 입장이냐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분들도 엄연한 위원으로서 특별위원회 소속의……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억지를 부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요, 그 2개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논의를 해……

○심상정 위원 어쩔 그렇게 억지를 부리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1년 이상 해 왔지 않습니다.

○심상정 위원 저도 참 역대 노동부장관들 겪어 봤지만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리고 노사정위원회에서……

○심상정 위원 사실과 다른 말씀을 그냥 너무나 천연스럽게 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노사정위원회에서 공익 의견을 보냈다는 얘기는 그 부분을 참조하려고 한 거지 않습니까.

○심상정 위원 자, 됐습니다. 됐고요.

○위원장대리 이인영 잠깐만요.

장관님! 제가 위원장대행하면서 위원장 권한 잠깐만 사용할 텐데요.

장관님께서 질의받은 다음에 응답하시는 형태로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냥 중간에 서로 막, 지

금 어디 토론장에서 그냥 토론하는 게 아니잖아요. 질의응답 시간이잖아요. 그런 형태를 좀 정확하게 지켜 주세요. 그리고 발언시간이 필요하면 더 달라고 하시고요. 자꾸 중간에 끼어 버리시니까 지금 오전에 계속 엉켜 버렸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다 끝나고 이렇게, 질의를 다 해 주신 다음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인영** 아니, 묻는 거에 대해서 대답하시면 되지, 왜 또 그렇게 어깃장을 놓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닙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저는 사실관계를 말씀하시면 사실관계 틀린 부분은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대리 이인영**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물어보면 대답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 안 된 다음에 그거 해명할 게 있으면 위원장한테 추가로 시간을 요청해서 가지고 그때 해명하시면 되지, 질의 중간에 자꾸 끼어 가지고 그건 아니다, 저렇다 이렇게 하면, 질의도 아닌데 응답을 그냥 막 해 버리면 곤란하다 이런……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심상정 위원** 또 지금 계속……

저 발언시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인영**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시 요청을 해서 가지고 정정을 하시면 되잖아요.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의견, 고용노동부장관의 입장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인영 간사, 김영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전문위원들이 보고서 쓰면 그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입장이 아니듯이 공익전문위원들이 쓴 걸 가지고 와 가지고 마치 무슨,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입장도 아닌 것을 가지고 와서, 공익위원 입장이라도 문제지만, 그것을 마치 노사정위원회 입장인 것처럼 이렇게 강변하면 서로 대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인제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실 때 지금 노동5법이라는 것이 아주 기술적이고 실용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년 비정규직으로 설움받고, 평생 정규직으로 사는 것과 평생 비정규직으로 사는 것은 노동

자 개인의 삶과 인격을 결정하는 문제예요. 헌법에서도 명확하게 근로조건이 인간적인 삶을 규정하는 문제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한 고용 기법에 해당될지 모르지만 노동자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대적인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입장은 그런 견지에서 노동법을 다뤄야 된다 이 점을 전 지적을 드리고요.

아까 은수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여태껏 통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기간제법·파견제법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기간제·파견제 노동자들의 입장이 그렇다 이야기해요. 양대 노총이 다 부인하고 여기 노총 위원장이 와 가지고 1인 시위를 지금 며칠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그래요. 참, 사실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지록위마(指鹿爲馬)같이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는 대화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을 노동부장관이 기간제 노동자들의 입장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왜곡된 자료를 가지고, 금재호 씨가 공익위원인데 공익위원이 노동부하고 교감 없이 그런 설문을 했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게 아니면 정확하게 반박을 하세요, 근거를 가지고 오셔서. 이런 식으로 노동부가 일을 해 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 막중한 삶을 규정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저는 이런 상태에서, 이런 근거 자체가 우선 매우 인위적이고 왜곡됐고, 또 지금 노동 문제를 다루는 또 하나의 우리 박근혜정부의 사령탑인 김대환 위원장이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고 하고, 또 노사정위원회 당사자들이 지금 이 문제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다뤄지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특히 이 기간제법과 파견제법이 소위에서 심의되는 것을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여야 합의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어도 기간제법·파견제법의 근거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제가 누누이 지적했습니다. 여론조사 그건 대국민 사기예요. 대국민 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로잡고 사과하고 공익위원 사퇴시키고 이런 정도 전체되지 않고, 또 김대환 위원장이 이 문제를 국회에서 다루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야당이 이걸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심상정 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 저것 좀,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장관, 우리 사회가 요즘 아주 내수 때문에, 내수시장이 완전히 꽁꽁 얼어버어서 저도 동네에 가 보면 사람들이 아주 죽겠다고 그러니까. 가게 문을 막 닫고 있고요. 왜 이런 줄 아세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우원식 위원 제가 보니까요, 결국은 이런 문제예요.

지금 자료를 올리려고 그랬다가 말았, 지금 좀 오류가 난 모양인데.....

이 재벌들의 상태가 사내유보금으로 표현되어지는 걸 보면 굉장히 돈을 많이 쌓아 놓고 있어요. 2009년에 10대 재벌이 271조였던 게 2014년 1분기 때는 515조가 돼요. 그리고 작년 앓고, 올 초로 가면 30대 재벌 하면 710조가 됩니다.

그런 반면에 서민들의 삶은 아주 형편없어졌어요. 그 이유가, 지금 공식적으로는 600만이라고 합니다만 100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삶이 아주 엉망이 됐고요. 그리고 유통재벌들이 동네 상가, 재래시장 싹쓸이해 가지고 동네 자영업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술 탈취하고 하도급 대금 제대로 안 줘서 굉장히 중소기업들도 어려워져 있어요. 다 하청계열화돼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재벌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던 거를 이제 내수시장으로 돌릴 수 있도록 일한 만큼 대가를 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장관은 그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런 취지의 내용이 노사정 대타협 안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비정규직을 보

호하는 게 진짜 뭐냐..... 아주 근본에 관한 문제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비정규직법 만들 때 그때 2년으로 했던 이유가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한 번 이야기했던 거 같은데, 비정규직의 평균 재임기간이 2년 4개월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4년 씩으로 늘려 놓으면 4년 동안 재임할 수 있는 비정규직이 없어요.

아까 여러 가지 통계를 봤습니다만 1년 미만하고 관두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고 5년 이상 장기 근속하는 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적어요. 그만큼 고용이 어려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정규직 4년 한다고 해서 그 비정규직들이 4년 내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평균 재임기간이 왜 있습니까? 그래서 평균 재임기간에 가기 전에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해야 최소한의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서 2년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해 놓으니까 1년 5개월 이상 넘은 노동자들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율이 2010년의 21%에서 2014년에 33.4%로 갔어요.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견이나 간접고용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거 완전히 방치돼 있기 때문에 이게 파견이나 간접고용으로 자꾸 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 비정규직법의 효과를 별로 보고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면 간접고용을 억제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정규직 전환장치를 잘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이건 정말 대기업들의 소원수리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장관, 여러 가지로 지금 역지를 쓰면서 우리 심상정 위원 말씀대로 거짓말을 계속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100만 해고 대란설, 그게 우리 사회에 미쳤던 영향이 얼마나 큼니까?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때 100만 해고 대란설 장관이 얼마나 우기고 주장했습니까? 장관 되실 때 그 통계 잘못됐다고 사과했잖아요. 지금도 분명히 조금만 지나면 장관의 지금 이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그게 너무나 명약관화해요. 진짜 보호해야 될 장치를 제대로 만들지 않고 재벌들한테, 대기업들한테 아무 때나 자르고 아무 때나 값싼 노동자 쓸 수 있도록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내가 하나하나 따지고 싶어도 너무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따질 필요도, 따질 이유도 별로 없어서 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는 비정규직의, 최소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려면 간접고용 억제시키는 제도와 정규직 전환장치를 만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여러 의원들이 그런 법을 많이 내놨어요. 그런데 이걸 다 반대하고 계세요. 정작 해야 될 법은 반대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지금 말도 안되는, 파견을 확대시키고 비정규직을 4년 연장시켜서 대기업은 항상 비정규직을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를 지금 갖고 와서 이렇게 억지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대안에 대한 견해의 차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우원식 위원** 견해의 차이가 아니고.

장관 지난번에 100만 해고 대란설 그거 얘기할 때, 이명박 정권 때 했잖아요, 담당국장으로. 그래 가지고 그거를 3년 내지 4년으로 연장하려고 하다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결국 못 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때 당시에……

○**우원식 위원**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장관 되실 때 통계 틀렸다고 사과했던 말이에요.

지금 똑같이 그렇게 될 거예요. 마치 양치기소년이 되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정규직 전환비율이나 그 이후로 8년 동안 전환비율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때 통계가, 그때 제가 통계를 말씀드릴 때도 55세 이상, 즉 기간이 적용 제외되는 부분……

○**우원식 위원** 보세요. 지금 37만 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사업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통계상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우원식 위원** 37만 개 일자리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기자회견에서도 하고 그걸 그대로 따서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임금피크제해 갖고 13만 명 추가 일자리 생깁니까? 그거는 지난 9월 달에 고용부가 발표한 건데 고용부 자체 조사도 아니고 서울지역의 한 대학교수가 논문에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의 전제는 뭐냐면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가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으며 정년 60세까지 일할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때 얘기예요.

이렇게 정년 60세까지 일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노동자의 7%밖에 안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 같은 통계를 내놓습니까?

1분만 더 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임금피크제 관련된 것들도 각각 가정치가 달라서 저희들이 최소치를 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원식 위원** 가정치가 다르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도 15만 개 생긴다고요? 이걸 52시간으로 줄일 때 얘기예요. 지금 60시간으로 하면 3만 3000개에서 최대 6만 6000개인데 이걸 어떻게 15만 개라고 그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결국에 가서……

○**우원식 위원** 정말 52시간은 반대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중국에는 52시간으로 줄이는 걸로 설계를 해 봤지 않습니까.

○**우원식 위원** 정말 비겁하게 일자리 효과만 52시간 것 갖다 쓰고 말이에요. 이렇게 과장해도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최종적으로는 52시간 줄이는 걸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60시간으로 하잖아요, 지금 법이 통과되면.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 부분은 4년간 일시적으로 일몰로 허용을……

○**우원식 위원** 그러면 60시간으로 한 거에 대한 통계를 내놔야지 왜 52시간짜리 통계를 내놓으면서, 법은 60시간으로 돼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법이 52시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우원식 위원** 이인제 위원님이 지금 얼마나 괴로워하시면서 얘기를 듣고 계세요.

또 그리고 상위 10% 임금노동자들이 임금을 자제하고 기업이 거기에 대응투자하면 9만 개 일자리 생긴다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업이 이런 계획 발표한 적 있습니까? 완전히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37만 개라고 그러고 노동5법으로 개약하면 37만 개 일자리 생긴다고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국회에다가 이렇게 막 강요하고 말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는 야당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수십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다 연구자료를 어느 걸 쓰냐

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은 가급적 최소치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노동시장 개혁 그 자체에서 일자리 다 만든다기보다는 노동시장이 개혁이 되면 투자가 훨씬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로 인한 일자리 증대 효과가 더 클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새누리당 노동개약법과 2대 지침의 본질은 정규직 해고는 더욱 쉽게 하고 기간제·파견 등 비정규직은 쉽고 더 싸게 더 많이 쓰겠다는 정규직 해체 전략이라고 전 봅니다. 비정규직의 무한 확대 전략인데 이거를 고용안전법이니 일자리법이니 이거는 화장밭이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갈수록 여당도 모자라서 국회 전체에다가 이렇게 강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그런 도가 넘는 행태, 정말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장관님 지금 말씀 잘못하시면 우리나라 내수경제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비정규직들 삶을 이렇게 더 나쁘게 만들면 역사에 죄를 짓게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는 비정규직들 처우 개선에 가장 큰 방점을 두고 대안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지난 12월 11일에 고용노동부가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운영 방안 전문가토론회 개최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때 봉쇄한 채 진행하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전문가, 용역을 한 전문가 중심의 토론회인데 양 노총에서……

○**이인영 위원** 개방했는지 봉쇄했는지 그걸 제가 지금 여쭙는 거거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요, 양 노총에서 못 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그거는 옳지 않다, 그래서……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봉쇄한 채 하셨군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그 공청회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연내 지침 발표에 대한 의혹 이

런 것들이 꽤 퍼졌던데, 그렇게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이 밀도 있게 일단 협의를 진행하면서 최종적인 거는 결정을 하려고 그러합니다.

○**이인영 위원** 노사정 합의할 때 서로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래서 충분히 협의하자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런데 양대 노총, 특히 한국노총이 당사자였는데 그런 분들이 와 가지고, 공청회장에 오겠다고 그랬는데 봉쇄하고 못 들어오게 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요, 그러니까 못 하게 하는 거는 안 되고 몇 분이 들어와서 충분히 듣고 의견 개진하는 것은 저희들 하자……

○**이인영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공청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못 하게 하겠다 이런 의사를 분명히 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어떻게 그렇게 알고 계시는지 좀 상세하게 그 경위서를 주실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관련 경위는 저희들이 한번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국장님? 담당국장님, 그쪽에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정보가 입수된 건가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 정보를 어디로부터 어떻게 입수했는지 경위서를 주세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우선 정확한 정보도 아니었는데 사전에 봉쇄했으면 노사정 합의정신을 제가 볼 때는 위배한 거지요.

그다음에 연내 발표 지침과 가이드라인으로 가려고 한다, 이런 연내 발표의 의혹이 있어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명료하게 해 주시지요. 충분히 논의할 거고 그러지 않겠다, 그러지 않을 거다 이런 겁니까, 아닙니까? 지금 논의도,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는 자리조차도 봉쇄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연내에 없습니까,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우선 당사자가 저희가

약속한 대로 협의에 충분히 임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협의를 충분히 되면서 나머지 문제는 결정하는 게 옳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도 요청하고 있고……

○이인영 위원 아니, 어쨌든……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이 직접 요청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인영 위원 어찌 됐든 그러면 노사정의 한 당사자였던 한국노총 같은 경우가 그 논의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논의에 임하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협의를 하자고……

○이인영 위원 잠깐만 좀 들어 보세요. 얘기하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정말. 질의를 하고 시간 드린다고요.

한국노총이 지금은 충분한 논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논의를 못 하겠다, 혹은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논의를 못 하겠다, 혹은 논의조차 할 생각도 없다,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어찌 됐든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은 거잖아요.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도 이런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시도들 이런 것들을 계속 진도를 나가실 건지 아닌지 이걸 제가 여쭙 보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우선 4월에는 6~7월에 한다고 했다가 다시 7~8월로 연기했고……

○이인영 위원 노사정 합의는 9월 15일이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요, 제가 금년도의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7~8월에 하기로 약속을 했다가 다시 연기를 했고 그다음에 9월 15일 노사정 합의하면서 충분히 협의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 진행을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협의에 요청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보고 있고, 앞으로의 일정은 협의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요청할 겁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협의에 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가 수차례 연기해왔기 때문에 미리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지금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진실로 원하

는 것은 당사자가 진솔하게 협의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이인영 위원 진솔한 협의에 임하기를 바라는 것 말고 추가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만약에 한국노총에서 협의에 임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고용노동부가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올해 내로 할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지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뭘 가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당사자들한테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설득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쪽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인영 위원 제가 볼 때는 노사정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입법 발의하셨잖아요? 제가 그것을 청부입법이니 대행입법이니 이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입법 발의를 하셨고, 제가 볼 때는 그게 반칙 출발한 건데요. 반칙 출발한 것에 이어서 노사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충분한 협의를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의도가 있어 보이네요. 그것은 명백한 반칙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입법하고 지침하고를 함께 말씀을 주셔서, 입법은 저희들이 3개 법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이인영 위원 아니, 그 입법 말고요. 그것에 이어서 저성과자 일반 해고라든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해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으로 하려고 하는 이 시도가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면 이게 일종의 전과 비슷한 건데요, 이게 이렇게 되면 명백한 반칙 아니냐 이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당사자가 협의에 충분히 응하도록……

○이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얘기 벌써 세 번째 하셨으니까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요, 그 이전에 이것 지침과 가이드라인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법을 넘어서 한다라면 위법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법과 판례에 따라서 한다는 명확한 근거를, 법과 판례라는 한정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법과 판례 범위 이내에서 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지침과 가이드라인으로 정한다가 아니라 법률로 정한다 이 부분을 위법하시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닙니다.

○이인영 위원 좀 들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인영 위원 제가 질의할 겁니다. 장관님이 저런 식으로 얘기하신 것 다 발언시간으로 보충해 주세요.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안 그러면 저 계속 하루 종일이라도 그냥 마이크 없이 하겠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 근로기준법 23조(해고 등의 제한)과 관련한 조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등을 하지 못한다’ 이게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법에 근거해서 법원에서 판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왜 지침으로 다시 조정을 하려고 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인영 위원 예.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수많은 판결들이 있고 그게 섞여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유가 되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 사유가 해당된다 하더라도 바로 내보내는 것이 옳지 않고 교육을 시켜서 다시 능력을 향상시킬 수는 없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배치해서 쓸 수는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판결 정신에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기본 판결들을 가지고 그것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알기 쉽게 해 준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 판결을 넘어서서 하게 되면……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예시적 수준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인영 위원 저 한 2분 정도 더 해야 돼요.

그다음에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

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조항이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이인영 위원 이거에 입각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왜 필요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 부분에 입각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인영 위원 그리고 노사 간의 자율적인 단체협상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익 분야, 불이익 분야가 딱 명확해지면 다툼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변경하는 내용이……

○이인영 위원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 법원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동의를 받아야……

○이인영 위원 법원보다 고용노동부가 더 정확하게 판결할 수는 없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이 이익 변경인지 불이익 변경인지, 해고하고 달리 이 부분은 이익 변경에는 의견만 듣고 불이익 변경은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쳤는지 이것은 감독관이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것은 볼 수 있겠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감독관이 정확하게 절차를 거쳤는지 심사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지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는 취지입니다.

○이인영 위원 저는 지침과 가이드라인으로 갈 문제가 아니라 법으로 가고 법원으로 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지침과 가이드라인으로 하는 것, 그것이 법의 판례들 이런 것들을 예시하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 보지요.

이게 위법적이고 탈법적이고 그다음에 위헌적인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시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이 모든 것을 가지고 지침과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갑니까, 지금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법원에서 주요한 판결이 나오면, 예를 들면 전원합의체 판결이랄지 이런 판결이 나오면 저희들이 지침을 보완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관련 지침도 현재 지침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우리가 취업규칙을 바꾸면서 이익적인 요소와 불이익적인 요소가 혼재돼서 많이 바꿉니다. 그럴 경우에 불이익으로 봐야 되는지 이익으로 봐야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은 대부분 일단 불이익적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불이익으로 보고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게 사회통념상 다른 기업들도 다 하고 있거나 또는 형평이 되는 다른 이익적 요소가 분명히 있거나 몇 가지 요건을 정해서, 또 동의를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거나 충분한 이런 절차적인 요건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몇 개의 조항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를 남용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정해 주는 취지입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수준에서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 예를 하나만 좀 들어 보세요. 법원에서 그렇게 좋은 판결이 나온 것으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예를 하나 들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를 들어서 2개 기업이 합병이 됐는데 하나는 퇴직금 규정을 바꾸고 다른 임금구조를, 수당을 바꿨을 때 수당문제를 전체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지 않은 가운데 수당변경 문제는 가능하다, 또 지금 58세까지 정년인데 정년 60세를 도입했다 그러면 2년 정년이 늘어난다는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정 수준, 과도하지 않은 수준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이익이 아니다 이런 취지들이 된다고 봅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다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 의도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요, 그……

○이인영 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주 장관님, 장관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개의 하면 좋겠는데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개의를 하자고 하는데 본회의가 열릴 때에는 상임위가 열리지 않게 국회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정회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답변내용이 그동안 우리가 상임위 했던 내용의 정부 입장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시면서 위원님들의 일문일답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답변이 아니시면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냥 좀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일문일답에, 계속 그렇게 좀 얘기를 안 하셔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아까 위원님들 질의시간부터 계속 이 회의가 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도 나가지도 못하고 이 시간까지 속개되어 있는 것 감안하셔서 장관님께서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정회했다가 오후에 개의를 요청하시는데 지금 행정실에 확인을 해 보니까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어 있어서 오후 2시에 개의를 못 하는 것을 양해를 드리구요, 꼭 보충을 하실 위원님에 대해서는 한 3분간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은수미 위원님, 장하나 위원님 신청하셨습니다.

은수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위원 제가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심상정 위원께서 ‘노동부가 이것을 조사하고 사과·해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노사정위 공익위원인 금재호 교수를 해임 조치하지 않으면 법안소위 할 수 없다’라는 얘기까지 했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데 계속 ‘이것은 내부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내부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참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한국리서치에서 기간제 근로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하면서 뭐라고 썼느냐 하면요, ‘한국리서치에서는 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함께 기간제 근로에 대한 인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자들에게 다 배포를 한 거예요, 국민들한테. 국민들은 이걸 믿지요. 아니, 장관도 믿어서 인용하셨다면요.

그래서 사실인가, 제가 설문 문항도 기가 막히

지만 그것은 뭐 차치하고 일단 사실인가를 했더니, 제가 분명히 사무국의 답변 보여 드렸고 기교대의 답변도 보여 드렸어요. ‘개인이 한 거다’, 우리는 그것 관여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의 공익위원이면서 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 교수이고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인 금재호 교수가 노동부를 상대로 사기를 했거나 또한 기교대와 노동경제학회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참칭을 했거나 혹은 고용부가 그것을 다 알고도 공모를 하거나 혹은 교감을 했거나 이런 의혹들이 불거지는 거예요. 내부 문제가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조사를 하시고, 제가 보도자료를 낸 게 언제인데 이런 것도 모른다는 답변을 하면서, 그리고 12월 7일인가 8일인가 한겨레에도 이미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사실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런 것은 깡무시하시고, 지금 며칠인데, 1주가 넘었는데……

‘내부 문제다’ 이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공모를 했거나 교감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지금 법안소위 위원 이신 심상정 위원께서 야당 위원으로서 법안소위 못 한다 이러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소리 나오지요. 고용부가 사기극에 공모했거나 교감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내부 문제이니 알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판에 우리가 어떻게 정부·여당이 밀고 있는 그 노동법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까? 사전에 지금 국회를 위협한 건데, 다시 한 번 대답하세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비정규 기간 연장과 관련된 조사는 그간 세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 세 번의 조사가, 처음에 고용노사관계학회도 하고 언론기관도 했고 그 답변 비율도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활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은수미 위원 그러니까 법안소위는 안 해도 된다? 노동부가 발목을 잡았는데, 사기극 공모나 교감 의혹……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가 다른 사실을 발표를 했거나……

○은수미 위원 위협을 해서 교감을 했다는 의혹 때문에 지금 정의당 입장에서는 법안소위를 못 하겠다고 하는데도 아무 답변이 없어요, 사실 확인을 다 해 드렸는데. 그러니까 결국 노동부는, 고용부는 법안소위 안 해도 된다는 답으로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자, 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위원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장하나 위원 의외시지요, 갑자기?

아시겠지만 가슴기살균제 피해자들 신청받는 기한이 올해 말인 거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장하나 위원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구에도 구청에서 발간하는 구정신문 같은 거 오지요. 거기 보면 공고가 있더라고요, 본인이 가슴기살균제 피해자면 신청하시라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예전에 가슴기살균제를 썼는데 호흡기에 이상이나 피해가 있거나 이런 설명 없이 그냥 가슴기살균제 피해자는 언제까지 신청하라고 되어 있어서 그게 뭔지도 모르는 분들은, 홍보를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참여하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조치는 하셨으나 사실 좀 미비한 상황 때문에 아시다시피 가슴기살균제 피해모임이 있고 또 도와주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죽 같이 해 온 단체가 있잖아요. 여기서 10월 말부터 또 예전에 했듯이 피해자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았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사이트나 아니면 본인들이 거의 이용하는 병원이 같잖아요, 아산병원 중심으로. 그래서 그렇게 수소문을 해서 피해자들을 더 모았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10월 말에 추가 접수자가 70여 명이었는데 10월 말에 그 시민단체와 피해자모임이 적극적으로 나선 이후에 지금까지 310여 명, 그러니까 갑자기 늘어났지요.

우리 정부에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한 것보다도 좀 발 벗고 나서니까 310여 명, 그중에 가슴기살균제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사망한 것 같다, 사망 주장도 현재는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38명이 된다고 합니다. 하면 이 제품이 우리가 거의 10여 년 이상 수백만 개 제조되고 팔렸다 이런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서 피해 규모는 우리 예상을 넘어설 거다 이런 말들이 좀 있었는데, 다른 것은 아니고요,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사고접수 기한을 올해 말이 아니라 좀 연장하는 데 혹시 다른 문제가 있으신지, 연장 조치……

○**환경부장관 윤성규** 다른 문제는 특별히 없지만 이게 행정의 어떤 일관성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하나 위원** 예, 일관성 부분……

○**환경부장관 윤성규** 작년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기한을 줘서 접수를 받고 또 금년에 특별히 우리 김영주 위원장님이 관심을 갖고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연말까지 또 했는데 이것을 밥 먹듯이 계속 연장, 연장할 것이냐, 이것은 행정의 신뢰성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장하나 위원** 그런데 충분한 홍보라는 부분에서 지금 어쨌든 수치적으로 정부가 충분히 했지만 또 일부 시민단체가 발 벗고 나섰더니 너무 차이가 현저하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전에 정부가 수개월간 70명인데 현재 한 50여 일 같아요, 50여 일 동안 70명에서 310명으로 너무 늘었으니까 이것은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거나 기법상에 어떤 미비점이 있었다라고 보여져서 그 점을 좀 감안하셔서 무한정 늘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대로 닫는 것은 정부도 조금 일견 책임이 있는 수치 같거든요. 늘리는 방법이 그렇다면 정부의 신뢰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모색을 해 봤으면 하는데 거기 담당자하고 국회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도 그 점 협조……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장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여쭙고 싶어서요.

그래서 지침과 가이드라인 발표를 연내에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 부분은 지금 정해

진 바가 없습니다, 협의를 해야 알기 때문에.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정해진 바가 없으니까 연내에 하지 않겠네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건 모르지요. 협의가 얼마나 진전, 속도에 따라……

○**이인영 위원** 그러면 모른다는 거는…… 하겠네요? 할 가능성이 있는 거……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것도 미정이라니까요, 위원님.

○**이인영 위원** 제가 이런 식으로 질의하고 또 질의하고 이러니까 좀 미우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요, 그거는 많은 노동계에서 여러 의견도 있고 그런데 저는 지금부터……

○**이인영 위원** 그것을 연내에 만약에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시는 순간 모든 것은 끝났다 이렇게 볼 겁니다. 하여간 좀 잘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법도 그렇게 엉망으로 가고 더군다나 지침과 가이드라인도 그렇게 엉망으로 가고 무법천지가 보시자는 얘기 같으니까 그것은 굉장히 중대한 어떤 행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정치적으로 굉장히 무겁게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굉장히 간단한 건데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번 대선 때 상시·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 직접고용의 원칙을 천명하신 건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이인영 위원** 그런데 지금 2년 플러스 2년으로 하면 4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근속연수가 7년에서 어떤 경우에는 5년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그 정도 4년이면 상시·지속적인 일자리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공약은 그러면 폐기하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닙니다.

○**이인영 위원** 정부정책이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선회하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인영 위원** 예.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우선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비정규직 대책안에 담겨 있는 부분이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가급적이면 정규직화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 6만 5000명을 했고……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 알겠는데, 그래서 다른 정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상시·지속적 일자리로, 그러니까 정규직을 고용하려고 하는 이 원칙은 계속 진행하는 거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렇습니다. 민간보조금도 더 주면서……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2년이라는 기간을 지나는 경우, 2년·2년 정도 그 일을 하는 경우 이견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게 여태까지 사회적 합의고 법정신 아니겠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도 보조금도 주고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강제할 수가 없는 게 한계지요.

○이인영 위원 아니, 법을…… 하여간 그다음에 그건 그대로 지킨다? 그 원칙과 제도를 지키는 거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 노력은 지속해 나갑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신청하면 4년까지 연장을 허용하는 것을 예외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렇습니다. 예외도 본인이 신청한 경우……

○이인영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순이네요.

기간제 노동자의 70%가 적용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면 이게 예외가 아니라 원칙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거기에 해당되는 기간제가 제가 알기로는 한 70만이기 때문에 한 3분의 1, 2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지금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기간제 노동자가 286만 명으로 나오고 이 중에 35세 이상이 209만 명, 200만 명 정도 이렇게 돼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55세 이상을 빼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인영 위원 그러면 왜 35세인지 이런 것들도 다시 논의해 보고 싶지만 그것을 차치하고 기간제 노동자의 70%가 적용받을 수 있는 이런 사안이라면 예외가 아니라 원칙이 바뀌는 거지요. 그것을 저 같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이것을 예외라고 얘기해 버리면…… 70%가 적용되면 그게

원칙인 거지 70%가 적용되는 게 예외일 수 있다고 얘기하면 그런 역지가 어디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그 통계가 현재 35세~54세까지거든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25%입니다, 통계가.

○이인영 위원 아니, 그러면 55세 이상은 또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현재 55세 이상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전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전체의 70%가 적용받는 그런 룰로 바뀌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으십니까? 그러니까 70%가 적용받게 된다고요, 예외가 아니라. 55세 이상이 예외가 아니고 35세 이상이 예외가 되면서 70%가 예외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그것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2+2로 하고자 하는 대상은……

○이인영 위원 그 바람에, 지금 이렇게 하시는 바람에 예외가 아니라 이게 이제 원칙이 되어 버린 거예요, 35세 이상으로까지 오는 바람에. 그런데 예외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이 세상에서 뭐가 예외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많은 선진국들도……

○이인영 위원 70%가 예외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많은 선진국들도 기간 제한을 했다가 기간 제한을 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인영 위원 많은 선진국에서 비정규직이 11%인데 우리나라 21%라면서요. 파견까지 하면 34.7%고, 정부 통계로. 어느 많은 선진국이 그렇습니까? 그리고 선진국의 어느 나라가 비정규직을 이렇게 양산해 가지고 경제성장을 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저희가 비정규직센터에서도 지난번 기간 제한이 풍선 효과, 악영향이 더 크다고 분석을 했고 저희들이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비정규직 쓰는 거는 막겠다라고 해서 장치를 둔 것입니다.

○이인영 위원 지금 이런 것이 해당 없는…… 질의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다른 토론으로 가시는 거라고요. 저는 하여간 언젠가는 장관님의 이런 상임위에서의 질의답변 방식, 제가 태도를 묻

제 삼는 게 아니라 방식이 좀 바뀌어야지, 저희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주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마친 의사일정 제94항~제120항까지 26건의 법률안과 의견제시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 모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심사한 의안 중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의사일정 제96항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해서는 양당 간사님과 협의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민현주 위원님과 장하나 위원님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에 맞도록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이인제 위원님, 이인영 위원님, 장하나 위원님 특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권성동	김영주	김용남	민현주
심상정	우원식	은수미	이석현
이완영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장하나	최봉홍	한정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전문위원	김양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환경부

장관	윤성규
기획조정실장	백규석
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자연보전국장	이민호
자원순환국장	신진수
상하수도정책관	오종극
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국제협력관	주대영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기획조정실장	한창훈
고용정책실장	이재홍
국제협력관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	정형우
고용서비스정책관	권기섭
청년여성고용정책관	나영돈
고령사회인력정책관	문기섭
직업능력정책국장	박종길
노사협력정책관	임무송
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공공노사정책관	황보국

【보고사항】

○위원 사임 및 보임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김용남	김재경	새누리당	2015. 11. 19
김재경	김용남	"	2015. 11. 20
김용남	김재경	"	2015. 11. 30
김재경	김용남	"	2015. 12. 4
양창영	김희정	"	"
김희정	양창영	"	2015. 12. 15

○의안 회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5. 11. 10 권성동·양창영·김세연·이재영·정수성·김정록·박덕흠·최봉홍·김한표·홍문표 의원 발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5. 11. 10 권성동·양창영·김세연·이재영·정수성·김정록·박덕흠·최봉홍·김한표·홍문표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1일 회부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

(2015. 11. 11 장하나·윤후덕·은수미·우원식·
심상정·박원석·정성호·서영교·박남춘·
최원식·이미경·이석현·김춘진 의원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

(2015. 11. 11 장하나·윤후덕·은수미·우원식·
심상정·박원석·정성호·서영교·박남춘·
최원식·이미경·이석현·김춘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2일 회부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5. 11. 12 함진규·홍철호·강은희·이종배·
이상일·박창식·박윤옥·김태원·오신환·
문대성 의원 발의)
11월 13일 회부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
발의)**

(2015. 11. 20 박덕흠·박성호·이노근·이장우·
김희국·김태원·이헌승·함진규·황영철·
홍문표·이학재 의원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석 의원 대표
발의)**

(2015. 11. 20 이윤석·남인순·전순옥·윤후덕·
임수경·윤관석·정성호·유성엽·박남춘·
김상희·김경협·김광진·김을동·문대성·
이우현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3일 회부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

(2015. 11. 24 이자스민·이한성·인재근·박인숙·
정희수·안홍준·서상기·권성동·양창영·
신경림 의원 발의)
11월 25일 회부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015. 11. 25 이인영·한정애·장하나·은수미·
우원식·이석현·김영주·최규성·오영식·
인재근 의원 발의)
11월 26일 회부됨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의원
대표발의)**

(2015. 11. 30 전정희·이미경·최규성·김관영·
김윤덕·유성엽·이춘석·박완주·김성주·
한정애 의원 발의)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 의원 대표
발의)**

(2015. 11. 30 황인자·박윤옥·정미경·조경태·
양창영·손인춘·장윤석·권성동·조명철·
김성태·유기준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일 회부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5. 12. 4 박인숙·이한성·유승민·조명철·
이명수·유재중·김태환·서상기·김세연·
홍지만·박명재·김태원 의원 발의)

12월 7일 회부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환 의원 대표발의)

(2015. 12. 8 김태환·서상기·정희수·강기윤·
신경림·류지영·최봉홍·박인숙·김명연·
김희국·박명재·김태원·권성동·정수성·
박대출 의원 발의)

12월 9일 회부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

(2015. 12. 9 최봉홍·박창식·양창영·이상일·
박민식·박성호·정희수·주영순·김재원·
정병국·송영근 의원 발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석 의원 대표발의)

(2015. 12. 9 이윤석·홍영표·주승용·최민희·
김영록·박지원·이미경·나경원·강창일·
한정애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0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

(2015. 11. 10 김희국·한선교·이한성·류지영·
권은희·이종배·이완영·이종진·서상기·
이철우 의원 발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15. 11. 10 이종배·서상기·안상수·이정현·
경대수·홍문표·김승남·신의진·이인제·
이이재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1일 회부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5. 11. 11 신상진·김을동·이종진·이재영·
이명수·송영근·유승우·박성호·강석호·
김태원 의원 발의)

11월 12일 회부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2015. 11. 18 유성엽·설훈·황주홍·김영록·
홍종학·백재현·오제세·김승남·송호창·
부좌현·權垠希 의원 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2015. 11. 18 백재현·부좌현·박범계·우윤근·
황주홍·안규백·정청래·김성곤·홍종학·
이개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9일 회부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호준 의원 대표발의)

(2015. 11. 20 정호준·신경민·전순옥·장병완·
김민기·윤관석·이개호·박광운·이찬열·
박홍근 의원 발의)

11월 23일 회부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현주 의원 대표발의)

(2015. 11. 23 민현주·안홍준·홍문표·류지영·
조명철·이한성·유승민·이종훈·이학재·
이만우 의원 발의)

11월 24일 회부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 의원 대표발의)

(2015. 11. 27 이강후·이찬열·이우현·이노근·
양창영·홍지만·박명재·김도읍·이정현·
정두언 의원 발의)

11월 30일 회부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權垠希 의원 대표발의)

(2015. 12. 1 權垠希·송호창·우윤근·유성엽·
신경민·최원식·박민수·김광진·박광운·
한정애 의원 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내현 의원 대표발의)

(2015. 12. 1 임내현·김동철·김윤덕·박홍근·
안민석·윤관석·이개호·이미경·정성호·
정세균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일 회부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15. 12. 2 우원식·이인영·인재근·김광진·
은수미·이개호·노웅래·윤후덕·전해철·
진선미·유은혜·홍종학·장하나 의원 발의)

12월 3일 회부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운 의원 대표발의)

(2015. 12. 4 박광운·權垠希·천정배·우윤근·
김현미·신경민·최재성·변재일·이개호·
전정희·윤후덕·부좌현·김광진·김영록·
황주홍 의원 발의)

12월 7일 회부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

(2015. 12. 8 강기운·김기선·김성찬·김태원·
박덕흠·박성호·서상기·안홍준·윤영석·
이노근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

(2015. 12. 8 강기운·강길부·김기선·김성찬·
김태원·박덕흠·박성호·안홍준·윤영석·
이노근 의원 발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

(2015. 12. 8 강기운·강길부·김기선·김성찬·
김태원·박덕흠·박성호·안홍준·윤영석·
이노근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

(2015. 12. 8 강기운·강길부·김기선·김성찬·
김태원·박덕흠·박성호·안홍준·윤영석·
이노근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

(2015. 12. 8 강기운·김기선·김성찬·김태원·
박덕흠·박성호·서상기·안홍준·윤영석·
이노근 의원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

(2015. 12. 8 강기운·김기선·김성찬·김태원·
박덕흠·박성호·서상기·안홍준·윤영석·
이노근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

(2015. 12. 8 강기운·강길부·김기선·김성찬·
김태원·박덕흠·박성호·안홍준·윤영석·
이노근 의원 발의)

이상 7건 12월 9일 회부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2015. 12. 9 박덕흠·이종배·박윤옥·이노근·김희선·박성호·유의동·김학용·김성태·박상은 의원 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5. 12. 9 황주홍·윤호중·김우남·유성엽·부좌현·변재일·신경민·안민석·이찬열·최동익·이윤석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0일 회부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

(2015. 12. 10 이자스민·이한성·신경림·최봉홍·민현주·홍문표·윤명희·진영·장하나·이재오 의원 발의)

12월 11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2015. 11. 10 부좌현·이찬열·윤후덕·유기홍·이원욱·노영민·백재현·황주홍·이개호·김우남 의원 발의)

11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2015. 11. 12 유의동·류지영·송영근·윤후덕·이노근·문희상·정병국·황진하·이완영·원유철·홍문중·김성찬 의원 발의)

11월 1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미래세대 기본법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2015. 11. 13 김세연·박인숙·유승우·최봉홍·송영근·유재중·신상진·김희국·박성호·김제식·배덕광·박민식 의원 발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 발의)

(2015. 11. 13 김성곤·조정식·이개호·김춘진·주승용·진영·박주선·이찬열·안규백·황주홍·신정훈·추미애·김영록·안홍준·심재권·김제남 의원 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영 의원 대표발의)

(2015. 11. 13 진영·김성곤·조정식·이개호·김춘진·박주선·주승용·이찬열·안규백·황주홍·김제남·신정훈·추미애·김영록·

안홍준·이윤석·정병국·김태원·이운룡·임수경·변재일·심재권·이한성·김을동·문정림·김명연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1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 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2015. 11. 20 염동열·강은희·윤재옥·박창식·김명연·권성동·홍문표·안홍준·함진규·한기호 의원 발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임금피크제 강요 중단 촉구 결의안

(2015. 11. 20 이상민·송호창·유승희·최원식·박수현·안민석·문병호·우상호·이상직·최민희·이개호·이종걸·노영민·서영교·주승용·유성엽·이춘석·김현미·박지원·박병석·유인태·박범계·노웅래·임내현·서기호·우윤근·윤후덕·김영록·정청래·전해철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 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2015. 11. 24 정부 제출)

물관리기본법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5. 11. 24 김상희·김윤덕·양승조·김영록·이언주·장하나·주승용·원혜영·박수현·이석현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 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15. 11. 26 우원식·박광온·윤후덕·배재정·노웅래·유은혜·이개호·인재근·김현미·이학영·진선미·신기남·김성곤·장하나·송호창·박홍근·이인영·황주홍 의원 발의)

11월 2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유교문화 계승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

(2015. 11. 27 장윤석·정수성·이재영·이인제·오신환·경대수·김광림·박덕흠·강석호·

이철우 · 이한성 · 김춘진 · 김영록 · 이완영 의원 발의)

11월 3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15. 11. 26 우원식 · 박광온 · 윤후덕 · 배재정 · 노웅래 · 유은혜 · 이개호 · 인재근 · 김현미 · 이학영 · 진선미 · 신기남 · 김성곤 · 장하나 · 송호창 · 박홍근 · 이인영 · 황주홍 의원 발의)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15. 11. 30 이종배 · 김제식 · 김동완 · 양창영 · 안상수 · 김한표 · 박맹우 · 김용남 · 이노근 · 이에리사 · 이정현 의원 발의)

월남전참전유공자에 대한 포괄적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

(2015. 11. 30 박민식 · 이연주 · 노웅래 · 경대수 · 황주홍 · 김재경 · 장윤석 · 김관영 · 윤영석 · 여상규 · 이재영 · 이학재 · 염동열 · 김영우 · 김제식 · 이장우 · 안규백 · 이진복 · 이채익 의원 발의)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2015. 11. 30 홍철호 · 윤후덕 · 송영근 · 정미경 · 이노근 · 이우현 · 유의동 · 박덕흠 · 손인춘 · 이학재 의원 발의)

지속가능한 물환경 조성을 위한 물관리기본법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

(2015. 11. 30 양창영 · 이한성 · 신경림 · 최봉홍 · 박창식 · 이자스민 · 경대수 · 황영철 · 김정록 · 강석훈 의원 발의)

이상 5건 12월 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근로자에 관한 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15. 11. 30 진선미 · 김승남 · 김상희 · 이학영 · 장하나 · 남인순 · 추미애 · 우원식 · 신경민 · 김성곤 · 신기남 · 이미경 · 부좌현 · 배재정 · 이찬열 · 황주홍 · 박홍근 · 김광진 · 노웅래 · 박남춘 의원 발의)

12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가뭄정보의 공동 활용 및 가뭄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

(2015. 12. 3 이자스민 · 류지영 · 송호창 · 조명철 · 황주홍 · 김광립 · 양창영 · 유승민 · 박명재 · 경대수 · 김명연 · 홍지만 · 이학재 · 이한성 의원 발의)

12월 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5. 12. 8 박성호 · 강기윤 · 홍지만 · 김성찬 · 박덕흠 · 이노근 · 이우현 · 이장우 · 이학재 · 이헌승 · 함진규 · 김태원 · 강석호 · 강동원 · 이종배 · 유재중 · 이주영 · 이완영 · 김태호 · 배덕광 · 유일호 · 최봉홍 · 양창영 · 홍철호 · 이이재 · 이상일 · 박윤옥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15. 12. 8 강기윤 · 김기선 · 김성찬 · 김태원 · 박덕흠 · 박성호 · 서상기 · 안홍준 · 윤영석 · 이노근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15. 12. 8 강기윤 · 김기선 · 김성찬 · 김태원 · 박덕흠 · 박성호 · 서상기 · 안홍준 · 윤영석 · 이노근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